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2020년 2월 10일(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관 | 박주민 국회의원

주최 |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4.16연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 토론회

2020년 2월 10일(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좌장

이태호 (4.16연대 사무처장 직무대행)

□ 사회자

조영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

□ 가족 인사말씀

□ 환영사

전해철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 발제문 5

기무사 등 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문제점

6

이호영 (박사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의 문제점(판결 및 고발내용을 중심으로)

28

류하경 (변호사)

국가기관의 사찰행위 금지강화를 위한 대책(현행법과 대체입법방안)

64

이정일 (변호사)

□ 토론 78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79

황필규 (변호사/가급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82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국정원감시네트워크)

89

오병일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91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 토론회

- 발제문

기무사 등 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문제점

이호영 (박사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의 문제점 (판결 및 고발내용을 중심으로)

류하경 (변호사)

국가기관의 사찰행위 금지강화를 위한 대책 (현행법과 대체입법방안)

이정일 (변호사)

기무사 등 공안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문제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이호영

I. 들어가며

지난 2019년 12월 24일,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사령부 및 현장 기무부대원 60명으로 ‘세월호 관련 TF’를 구성하였고 ‘유가족 지원’, ‘탐색구조·인양’, ‘불순세력 관리’ 등으로 업무를 분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유가족과 대책위 인사들을 사찰하고 이들의 동 동향과 관계, 경력 등을 정리하고 성향을 강경·중도 등으로 분류한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이란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재판 중 소 전 참모장은 “기무사의 정당한 첩보 수집이었다.”, “대통령 국정운영 보좌 기관이란 사명감도 있었다.”,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명령을 이행한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죄가 되지 않음을 강변하였으나 이를 인정되지 않았다.¹⁾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한 것은 기무사만이 아니었다. 2014년 5월 19일, 단원경찰서 소속 정보과 형사 2명이 안산에서 진도로 내려가던 유가족들을 몰래 따라가다가 그 날 저녁 전북 고창군 고인돌휴게소에서 붙잡혔다. 같은해 7월 13일에도 안산 단원고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걸어가는 도보순례를 하던 유가족들을 공주경찰서 소속 정보과 형사가 미행하였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²⁾ 국정원 역시 세월호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정권 교체 후 만들어진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조사를 하기도 하였다.

국정원-기무사-경찰, 이들은 왜 민간인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였을까? 답에 대한 힌트는 미셸 푸코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감시와 처벌』³⁾에서 공리주의자인 제러미 벤담이 이야기한 파놉티콘(Panopticon)을 철학적으로 고찰한다. 파놉티콘은 1명

1) 오마이뉴스, ‘세월호 사찰’ 기무사 간부들의 변명, 2019. 12. 24.자

2) 한겨레, [단독] 사복 경찰 또 세월호 유가족 미행하다 ‘들통’, 2014.7.13.자

3) 미셸 푸코,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 1994.

또는 소수의 감시자가 모든 수용자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시할 수 있는 형태의 원형감옥을 말하는 것으로, 푸코는 이 파놉티콘을 새로운 근대적 감시의 원리를 체화한 건축물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근대권력”의 특징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에 따르면 근대는 계몽주의 확산과 더불어 파놉티콘을 활용한 처벌의 인간화가 이루어 졌으나 이것은 표면적 관대함과는 달리 처벌효과를 극대화하는 장치였다. 즉, 이것은 덜 처벌하는데 주안점이 있지 않았고 오히려 보다 더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인간의 몸을 구타하는 물리적 가혹성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법과 규율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하고야 만다는 보편성과 필연성을 증가시켰으며 사회 제도 안에 처벌하는 권력을 보다 깊숙이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통해 군중이 한 명의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시선의 작용에 의한 강제성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규율 사회’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근대에서 사람의 몸은, 통제하고 금지하며 조절하고 권면하는 권력 앞에 노출된다. 감옥은 다소간 엄격한 병영, 관대함이 없는 학교, 암담한 일터일 뿐 극단적인 경우 어떠한 질적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든 장소 안에서 근대 권력은 사람들을 ‘길들여진 몸’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법들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이 기법들은 “관찰, 규범적 판단, 검사”로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규율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정체성과 자화상 자체를 창출한다. 이를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행동이 항상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권력에 복속하게 되며, ‘규범적 판단’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비정상적인 인간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에도 순응하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공안기관을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자신들에 순응하지 않는 유가족들을 굳이 가둘 필요 없이 감시자들이 보내는 감시의 ‘시선’ 만으로도 유가족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을 규율하고 복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민간인 사찰에서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공권력에 의한 조사의 칼끝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선량한 민간인을 향해 있는 경우’를 민간인 사찰이라고 규정할 때 감시대상 스스로 권력에 순응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원초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실행되어 왔다.

이러한 민간인 사찰은 여론을 왜곡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사찰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 문란 행위이

다.⁴⁾ 동시에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헌법은 명시적으로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거의 자유(헌법 제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통신의 비밀(헌법 제18조)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비밀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국민에게 국가의 감시를 받지 않을 권리(감시당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암묵적으로 선언하고 있다.⁵⁾ 또한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의 개념을 만들어 감시의 문제에 접근해왔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로 정의되고⁶⁾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서 핵심인 개인정보는 객관적으로 혹은 주관적으로 개인의 비밀영역에 속하는 대상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감시받지 않을 권리와 그 보호영역에서 중첩된다.

‘민주주의 파괴’와 ‘기본권 침해’라는 중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 사찰이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다. 2014년 10월부터 약 5년 동안 국가정보원의 ‘프락치’로 활동하며 시민단체 ‘통일경제포럼’에 잠입해 회원들의 동향을 파악해 왔다고 고백한 김모 씨가 작년 8월 등장한 것⁷⁾을 볼 때 오히려 현재 진행형일 가능성이 높다. 설사 국정원이 해명한 대로 이것이 “적법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내사 사건”이며 그 수사의 일환이라고 할지라도 어둠 속 ‘시선’이 주는 감시와 자기검열의 효과는 여전하다. 주권자인 국민이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위해 아래에서는 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고 후 그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간략하게나마 제시하고자 한다.

4) 한희원,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부당한 감시활동의 문제점과 그 허용한계 그리고 방지책에 대한 소고”, 국가기관의 불법사찰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국가인권위원회), 2012, 17쪽.

5) 이준일, “블랙리스트의 헌법적 쟁점”, 세계헌법연구 제23권 제1호, 2017, 63쪽.

6) 현재 2005. 7. 21. 2003헌마282 등, 2014. 7. 24. 2013헌마423 등.

7) 한겨레, 국정원, 문재인 정부에서도 ‘프락치 수사’…민간인 사찰 논란, 2019.8.27.자.

II. 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주요 사례

1. 민간인 사찰 제도의 역사⁸⁾

(1) 호구조사제도

민간인 사찰을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 감시활동이라 정의할 때 ‘호구조사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호구조사제도는 해방과 전쟁과 같은 혼란한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각 경찰서 관내의 호구동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방경찰상의 제반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내무부령 제52호)’ 시행된 제도일 말한다.

근대적 의미의 호구조사는 갑오개혁 입법의 일환으로 마련된 호구조사규칙(1896.9.1)과 호구조사세칙(1896.9.3)이 공포되면서 시행되었다. 이 후 1909년 통감부의 민적법(民籍法), 1912년의 조선민사령, 1923년 조선 호적령 등이 제정 공포되면서 일제의 수탈도구로 활용되었다. 이는 해방 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는데 정부수립 후 제정된 호구조사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은 외근경찰관으로 하여금 구역 내 주민의 호구조사를 2개월마다 행하게 하였다. 이후 1969년 전문개정에 따라 호구조사 횟수가 년1회로 줄어들었으나 아래와 같은 호구조사사항을 세부적으로 작성되었으며 1987년에 폐지되었다.

이러한 호구조사는 호구별로 호구조사카드를 비치하고 주민에 대해 조사 기재하게 하였다.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정된 것 이외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었다.

직접조사사항	가. 본적·주소·전주소·출생지·신분·직업·성명·생년월일·거주연월일 및 전입적자의 친가주소 나. 동거인 및 고용인의 친가주소 다. 자가·차가별 및 자산상황 라. 교육 및 종교관계 마. 중요경력관계 바. 국가에 대한 특수한 공훈 기타 치안유지에 대한 공로 유무
--------	--

8) 이하는 신성식, “과거 경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한 실태 연구: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제28권 제1호(2011). 오동석, 국가기관의 사찰의 실태와 대응방안, 국가기관의 불법사찰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국가인권위원회), 2012.을 요약한 것이다.

	사. 불구·폐질여부 아. 재향군인 여부(제대연월일, 병종, 병과, 계급) 자. 현역 또는 징소집 해당여부 차. 상이군경 또는 군경유가족여부
간접조사사항 (보안상 요조사사항)	가. 부량부위도식자 여부 나. 불량소년 소녀 여부 다. 낭비방탕음일자 여부 라. 밀매음녀 및 밀매음매개자 여부 마. 마약류중독자, 마약류밀매, 흡식 및 동중개자 여부 바. 총포·도검소지 여부 사. 병약염세자 여부 아. 불량소행에 관한 사항 자. 가정불화 유무 차. 경제상의 신용 및 위험인물과의 사교관계 카. 요 구호대상자 여부 타. 기타 공서량속을 해할 우려있는 자 여부
사찰상 요조사사항	가. 요시찰 여부 나. 요주의인 여부 다. 월북자·부역자 또는 반공포로 여부 라. 정당 및 사회단체 관계 마. 기타 사상동향
형사상 요조사사항	가. 형사요시찰인 여부 나. 전과자 여부(처형연월일·형무소명·죄명·형명·형기) 다. 가출옥자, 형의 집행정지자, 형의 집행유예자, 형의 선고유예자 여부 라. 기소유예자·기소중지자·훈계방면자 여부 마. 도박상습자 여부 바. 급작히 거부가 되거나 극빈에 빠진 여부

<표1> 호구조사사항 (1969.12.30. 내무부령 52호 제4조)⁹⁾

이러한 호구조사제도는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경찰 편의적인 제도였다. 특히 인권침해

9) 신성식, 위의 글, 187~188쪽.

의 소지가 있는 정당 및 사회단체관계, 사상동향, 경제상의 신용, 교육 및 종교관계 등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경찰법상 허용하는 치안정보수집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었다.

(2) 요사찰 제도

사찰(查察)은 일반사찰과 요시찰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일반사찰(一般查察)’은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사찰을 뜻하고 ‘요시찰(要視察)’은 특정인물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찰을 의미한다. 요시찰제도는 일제경찰활동의 잔재로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1945년 해방과 미군정기를 거쳐 정부 수립 후에도 사찰대상 및 의미상의 변화는 있었지만 계속 존속하여 왔다.

1912년 말에 ‘형사 요시찰’을 규정한 내규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이것을 개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형사요시찰인취급내규』가 1931년 1월 조선총독부 내훈 제1호로 공포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관련 요시찰인명부 등에도 요시찰제도를 운용한 것이 나타나며, 동 카드에는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소, 직업 외에 소속단체 또는 계통, 친구 및 주된 접촉대상, 재산유무, 성격, 인상(외모) 등도 기재되어 있다.

해방 후 경찰은 일제의 요시찰제도를 일부 수정·보완하여 운영한다. 특히 한국전쟁기인 1952~3년 부역자나 대공인적위해자 등에 대해서는 요시인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경찰통계연보(1953~1957년) 자료에 따르면 전쟁이 끝난 후에는 특수요시찰인과 보통요시찰인으로 나누어 관리하였고, 1956년에는 특, 갑, 을로 요시찰인 분류기준이 정형화되었다.

이러한 요시찰 업무는 1961. 6. 10. 중앙정보부법에 따라 중앙정보부가 관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1975년 사회안전법 제정으로 그에 따른 보안처분대상자, 1989년 보안관찰법 제정으로 그에 따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요시찰인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실이 1994년 국정감사나 언론을 통해 알려짐으로써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후 1995년 ‘대공관리대상자 관찰업무지침’으로 변경되어 그 요시찰인 중 일부는 이 지침에 의한 관리대상자로 재분류되었으나 이 지침 역시 2004년 1월 경 폐기되었다.

(3) 공안사범자료¹⁰⁾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사상범, 특히 한국전쟁 당시 부역자와 보도연맹원 월북자 등 국방경비법 위반자,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자를 감시하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였다. 이러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리는 전쟁을 계기로 확대되고 보편화되었다. 정치적 반대자나 사상범을 대상으로 하는 정권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다.

이 자료들은 1950년대부터 축적되기 시작해 1980년 중반까지 다양한 명칭으로 통합·분리되면서 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요시찰인이나 민간인 사찰의 1차 자료로 쓰이게 되었다. 경찰의 항상적인 요시찰인 단속은 일선 경찰서에 지속적으로 보존되었다. 대상자는 주로 사상범을 포함한 정치적 반대자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었는데 가족관계와 동향 사상의 특이점 등을 낱낱이 기록하고 관리했다.

이렇게 각 기관별로 진행되던 사찰은 1980년 신군부의 등장으로 더욱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동안 각 기관이 관리하던 자료를 통합해 전자정보를 공유하는 형태로 체제를 강화했다. 전두환 신군부는 권력이 안정기에 접어든 1981년, 각종 대공정보자료를 통합하는 ‘공안사범자료 관리규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공안사범자료 관리협의회를 설치해 자료관리 조정과 개선, 이에 따른 관계기관 간의 공조사항과 전산처리대상 관리활용에 부수되는 사항 등을 각 기관이 모여 협의하도록 했다.

공안사범자료 관리규정에 따라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구축한 이 자료는 범죄조회기록을 제외한다면 가장 오래되고 방대한 양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작업은 1981년 6월부터 공안자료를 일제히 정비해 전산자료서를 작성한 뒤 치안본부 전자계산소에 설치된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982년 1월부터 각종 통계 및 조회에 이 자료를 활용하기 시작함으로써 공안사범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수사활동이 개시되었다. 1981년 9월 4일 대검찰청도 ‘공안사범자료 관리규정 시행지침’을 시달해 공안사범자료의 전산화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2009년 ‘공안사범’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부는 근거가 되는 ‘공안사범자료 관리규정’을 개정

하였을 뿐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2009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자기정보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10) 이하는 한성훈, 사찰 국가의 인권침해와 생활세계의 식민화, 역사비평 제100호, 2012, 432~436쪽을 요약한 것이다.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다.¹¹⁾

2. 공안기관별 주요 사찰 사례

(1)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김종필에 의해 만들어진 중앙정보부(이하 중정)에 뿌리를 둔다. 중정은 신군부가 등장한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로 개편되었다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1999년 1월 국정원으로 다시 개편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는 안기부의 부정적인 과거를 쇄신하기 위해 전체 인원 10분의 1에 해당하는 581명을 해고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가 집권했던 시기에도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을 계속되었다.¹²⁾

1) 미림팀 도청 사건

2005년 7월, 안기부가 국정원으로 바뀐 이후에도 민간인 사찰을 지속하였음이 폭로되었다. 전 안기부 직원이었던 김기삼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안기부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3년부터 1998년까지 5년간 비밀도청팀인 ‘미림팀’을 가동해 정계·재계·언론계 핵심 인사들을 불법 도청하였음을 털어놨다.¹³⁾

이후 발표된 국정원 자체 조사에 따르면, ‘미림’은 중앙정보부 시절인 1960년대 중반부터 운영된 국내 정보 수집부서 산하 여론조사팀의 별칭으로 1993년 7월 조직 개편과 동시에 1차 해체되었고 그 구성원들은 일반 정보수집과 내근요원으로 전보됐다. 하지만 문민정부 출범후 기관출입 금지 및 비노출 간접활동 원칙 준수로 정보수집 실적이 저조하자 1994년 6월 국내정보 수집담당 국장의 지시로 재구성되었고 보안유지 및 탐색 활성화를 위해 시내 중심가에 안가를 확보해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11)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제출한 공안사법자료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2009. 12. 9.)

12) 중정과 안기부는 권위주의 정부의 주요한 정권유지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각종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다.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발전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정과 안기부는 삼선개헌 등 중요한 정치국면에서 야당과 야당의원, 재야인사는 물론 집권당과 집권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도 사찰하였고 민주화 이후인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도 정치인에 대한 사찰을 지속하였다. 또한 노동 및 학생운동에 대한 사찰을 펼쳐 이들의 활동을 탄압하기도 하였다. 국정원,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국정원「진실위」보고서·총론(Ⅰ), 2007, 134~143쪽 등. 이 글에서 중정과 안기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그 사례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아서 임을 밝힌다.

13) 헤럴드, 전 안기부 직원, 불법도청 진상 털어놔, 2005.7.22.자.

이후 1997년 11월까지 3년 5개월동안 가동된 제2차 미림팀이 불법 도·감청으로 정보를 수집했던 대상은 주로 정계와 재계, 언론계 주요 인사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1997년 12월 대선 전에는 여당 내부 동향과 김영삼과 김대중 측근인사, 이회창씨 등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특히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홍석현-이학수씨 간 대선자금 전달과 관련해 오간 대화 내용이나 주요 기업의 빅딜 관련 내용 등도 미림팀을 통해 수집되었다.¹⁴⁾ 이 기간동안 사찰대상이 된 이들은 5400여명에 이른다.¹⁵⁾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부 시기였던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1월까지도 국정원은 대규모 불법 감청을 저질렀다. 당시 국정원은 불법감청 장비 ‘R2’를 개발해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 시민단체 활동가, 노동조합 간부 등 1800여명을 불법 사찰했다. 이로 인해 김대중 정부에서 활동한 이종찬, 천용택, 임동원, 신건 국정원장 모두 불법감청 관련 조사를 받았다.¹⁶⁾

2) 공작명 ‘포청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이라는 공작팀을 꾸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갈등을 빚던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사찰 대상에 포함됐다.¹⁷⁾

이 공작팀은 단장의 지휘하에 방첩국 직원들로 채워진 내사 파트, 사이버 파트, 미행감시 파트 등 3개 파트로 구성되었다. 단장은 당시 공작담당 직원들에게 “승진은 책임질 테니 벽을 뚫든 천장을 뚫든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라”고 지시했고, 또 사이버 파트에는 대상자들의 이메일을 건네며 “PC를 뚫어라”라고 지시하였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당시 문제가 되고 있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 확보에 주력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대북공작금에서 나왔다.¹⁸⁾

14) 연합뉴스, 국정원 발표로 드러난 미림팀 진상, 2005.8.5.자.

15) 국민일보, ['2차 미림팀' 수법 어떠했나] 3년5개월동안 5400여명 도청·사찰, 2005.12.14.자.

16) 경향신문, 중정·안기부·국정원..정보기관의 유구한 '민간인 사찰' 역사, 2019.9.14.자.

17) 경향신문, 중정·안기부·국정원..정보기관의 유구한 '민간인 사찰' 역사, 2019.9.14.자.

18) 연합뉴스, 민병두 “MB 국정원, 대북공작금으로 야당 정치인 불법사찰”, 2018.1.23.자.

3) 사회 주요인사 불법 사찰 사건

국정원은 2010년 1월부터 청와대(민정수석실, 홍보수석실, 기획관리비서관실)로부터 명진스님 관련 동향 보고와 경제활동을 요청받았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간부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 명진스님에 대한 경제활동을 지시하였다. 이후 국정원 담당부서는 명진스님 관련 동향과 정보를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및 국정원 지휘부에 수차례 보고하였으며, 심리전단은 2010년 3월부터 4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이버상에서 명진스님 비판 여론을 조성하고 봉은사 주지에서 물러난 2010년 11월 이후에도 보수단체를 활용한 규탄시위 등을 전개하였다.¹⁹⁾

다른 한편으로 괴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박재동 화백, 명진스님, 김인국 신부 등에 대한 불법사찰도 이루어졌다.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불법사찰기록 공개를 국정원에 청구하였으나 국정원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이들은 공개거부처분취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8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은 불법사찰기록 본인공개를 거부한 국정원에 취소판결을 내리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괴노현 사찰문건 30건, 박재동 사찰문건 5건, 명진 스님 사찰문건 30건, 김인국 신부 사찰문건 5건이 최소한 존재함을 확인되었다.²⁰⁾

4) 문화예술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및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사건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9년 동안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퇴출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지속적인 압력과 불이익을 줬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에 따르면, 2009년 2월 취임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내 특정인물과 단체에 대한 압박활동을 지시하였다. 청와대에서도 2009년 9월 ‘좌파 성향 감독들의 이념 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 종합 및 좌편향 방송 PD 주요 제작활동 실태’를 비롯해 2011년 6월 ‘좌편향 성향 언론인, 학자, 연예인이 진행하는 TV 및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 실태’ 파악 등을 수시로 지시하였고,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정부 비판활동 견제 방안>, <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관리 방안> 등을 ‘VIP 일일보고’, ‘BH 요청자료’ 형식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국

19)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 2017.12.21., 31쪽.

20) 오마이뉴스, 국정원을 상대로 '완승'을 거뒀다, 2019.09.18.자.

정원은 2009년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여, 정부 비판 연예인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및 소속상 대상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조치 유도 등 전방 위적으로 퇴출을 압박하였다. 심리전단은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면서 이들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인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였다. 2013년 8월 16일 <문화예술계 좌성향 세력 활동실태>, 10월 2일 <문화예술계 좌성향 세력 재확산 시도 차단 건의>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였고, 2014년 1월 27일에는 <문화예술계 보조금 지원기준 보완 필요의견> 보고서, 2월 20일 <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 심사체계 보완 필요 여론> 보고서를 청와대에 각각 보고하였다. 또한 2014년 3월 19일에 15개 단체, 249명의 인물의 명단과 함께 대응전략을 제시한 <문화예술계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 제하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하였으며 2014년 2월 22일부터 2016년 9월까지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관련 배제해야 할 인물인지 파악을 위해 8,500여 명의 인물에 대한 검증을 요청받은 후, 이 중 348명을 ‘문제인물’로 선별하여 통보하였다.²¹⁾ 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인물은 배우 문성근·권해효·유준상, 방송인 김미화·김구라·김제동, 가수 윤도현·신해철·안치환, 영화감독 이창동·박찬욱·봉준호 등 유명인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2) 구 국군기무사령부

구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방부 직할의 수사정보기관으로 군사에 관한 정보수집 및 군사보안 및 방첩,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 해방 이후 육·해·공군별로 방첩부대(육군 방첩부대, 해군 방첩대, 공군 특별수사대)가 존재하였나 1977년 9월 육군 보안사령부를 중심으로 해군과 공군의 방첩부대를 통합하여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로 확대 개편되었다. 보안사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화대 조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 군사반란을 획책·주도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 그러다가 1990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1991년 1월 1일에 기무사로 개칭하였다. 2018년, 기무사는 계엄령을 빙자한 친위쿠데타를 검토했다는 의혹이 밝혀지고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했음이 확인되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편되었다.

21)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위의 자료, 13쪽.

1) 청명 · 청수계획²²⁾

청명계획은 보안사가 1989년 4~6월 사이의 공안정국을 국가위기상황으로 판단하고 수립한 ‘예비검속성격’의 계엄대비계획을 말한다. 당시 보안사 3처는 A급 - 계엄목표 달성 결정적 장애자(전민련 · 전대협 · 전교협 핵심간부 등), B급 - 계엄시책 수행 장애자(민변 · 민교협 · 야권 간부 등), C급 - 국민 공감대 확보를 위해 처리해야 할 대상자(정부 비판 교수, 교사, 언론인 등)로 구분하고 이 기준에 따라 준안자료를 바탕으로 1차로 574명을 선정한 후 연구지별로 할당하여 내부를 지시하였으며, 각 예하 보안부대에 추가로 대상인물을 선정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 923명(A급 109명, B급 315명, C급 499명)²³⁾이 선정되었으며 이들의 인적사항 · 예상 도주로 · 예상 은신처 · 체포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명카드를 작성하고 계엄시 이들을 겸거 · 쳐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어 보안사 3처 6과 분석반은 ‘청수(동향파악)’ 대상자라는 가명칭으로 민간인에 대해 공개자료와 예하 보안부대의 ‘동향관찰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개인별 신상자료철을 작성 · 관리했다. 이러한 청명 · 청수계획은 1990년 보안사령부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양심선언’을 통해 폭로되었으며 당시 동향파악 대상자 색인표 1,303매와 개인 신상자료철 4부가 공개되었다. 이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기무사에는 이보다 많은 1,311명에 대한 ‘개인별 신상자료철(민간인 사찰카드)’이 보관되어 있었다. 민간인 사찰을 위해 보안사는 “현실문화사”라는 잡지사를 운영하며 “현실초점”이라는 계간지도 발간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 “현실문화사”라는 잡지의 편집장은 보안사의 군무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보안사가 서울대 근처에서

22) 이하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2007, 116~125쪽 및 한희원, 위의 글, 25~28쪽을 요약한 것이다.

23) A급 : 노무현 대통령(당시 통일민주당 의원), 이해찬 전 국무총리(당시 평화민주당 의원), 이상수 노동부 장관(당시 평화민주당 의원), 이강철 대통령 정무특보(당시 진보정치연합 공동대표), 임종석 의원(당시 전대협 의장), 고문 익환 목사, 이창복 전 의원(당시 전민련 상임공동의장), 유인태 의원(당시 진보정치연합 사무처장), 이태복 전 노동부 장관(당시 주간 <노동자신문> 편집실장), 정윤광 당시 지하철노조 위원장 등

B급: 김수행 서울대 교수, 강만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 이효재 전 이화여대 교수, 오세철 연세대 교수,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고 김진균 서울대 교수 등 학계 민주인사를 비롯해 한승현 전 감사원장, 박원순 변호사,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김갑배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고영구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민변 회원 등

C급: 김수환 추기경, 고 김승훈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함세웅 신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문정현 신부, 문규현 신부, 김성수 성공회 대주교, 윤정현 성공회 신부, 박형규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원형수 강경 제일감리교회 목사, 흥근수 서울 향린교회 목사, 불교계의 송월주 · 정토, 이용성 민중불교운동연합(민불련) 의장 등 종교계 인사와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중배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이근성 기자협회 회장 등

특별관리: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민주당 총재), 김대중 전 대통령(당시 평화민주당 총재),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당시 신민주공화당 총재) 등 ‘3김’에 대해서는 ‘최고의 정책 차원’에서 다룬다는 방침을 세우고 별도 관리. 한희원, 위의 글, 27~28쪽

‘모비딕’이라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되기도 하였다.²⁴⁾ 결국 청명계획은 윤석양의 폭로로 실행되지 못하였지만 민간인사찰(청수계획)은 실제로 실행되었다고 규정할 수 있다.

2) 민주노동당 당직자(2009) 및 조선대 교수(2011) 사찰

2009년 8월 기무사 수사관이 경기 평택시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쌍용자동차 파업 집회현장을 촬영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당시 수사관의 캠코더에는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한 시민이 평택 쌍용자동차 앞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이 외에도 당직자가 유인물을 배포하고 동료들과 대화하는 장면 등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요하게 촬영했다. 그리고 거주지와 활동, 사무실과 가족, 쌍용차 평택공장 앞 상황 등도 모두 담겨 있었으며 이러한 동선은 기무사 수사관의 수첩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다.²⁵⁾

이후 사찰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무사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확인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²⁶⁾

2011년에는 기무사 요원이 조선대 기광서 교수의 이메일 해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기 교수는 2011년 9월 초 “누군가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학교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뒤 자료를 가져가고 이메일을 훔쳐봤다”며 광주 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해킹에 이용된 IP를 역추적해 PC방 업주를 상대로 용의자들의 인상착의를 대조한 뒤 이들이 기무부대 소속 현역 군인과 군무원임을 밝혀냈다. 이들은 광주지역 기무부대 방첩담당자들로 한아무개 원사가 부하 김아무개 군무원에게 조선대 기 교수를 사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송파지역 기무부대 사이버 전문 요원 한아무개가 김 군무원의 요청을 받아 해킹을 돋는 한편 본인도 해킹에 직접 참여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사법처리되었다.²⁷⁾

24) 한겨레, ‘모비딕’의 숨은 또 다른 주인공, 2011.6.24.자

25) 오마이뉴스, “기무사 요원이 민간인 사찰한 동영상도 있다”, 이정희 민노당 의원, 기무사 해명 반박-동영상 증거 제시, 2009.8.12.자.

26) 아시아투데이, 법원, ‘기무사 민간인 사찰’ 국가 책임 인정, 2011.1.5.자.

27) 오마이뉴스, 조선대 교수 메일 해킹에 기무사 조직적 개입, 2011.10.21.자.

(3) 경찰

민간인 사찰에 나서는 기관으로는 경찰도 포함된다. 이 일을 수행하는 부서는 경찰 중에서도 정보국(이하 정보경찰)과 보안국(보안경찰)을 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 정보경찰과 보안경찰은 1910년 조선총독부 경무국 고등경찰과에서 시작되었으며 1940년 경무국 소속보안과에서 독립운동가 등에 대한 사찰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정부 수립 이후 이들 조직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경찰조직을 내무부 산하 치안국으로 편제하고 사찰 업무를 치안국 사찰과에 맡겼다. 이후 사찰과는 1950년 정보수사과로, 1953년 특수정보과로 개칭되면서 확대운영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애초 정보, 외사 임무를 주로 하던 사찰과는 확대개편 이후 정치, 문화 사찰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4.19혁명 이후 특수정보과는 대공분야로 범위가 축소되고 명칭도 정보과로 바뀌었다. 197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무부 치안국은 치안본부로 개편되었으며 치안본부 3과에 속하게 된 정보과는 1976년 4월 정보1과와 2과로 분리되었는데 이 때를 정보경찰과 보안경찰의 분리시기로 볼 수 있다. 제5공화국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부서와 업무는 크게 늘어났다. 1981년 6월 신설된 치안본부 4과 산하에 정보1,2,3과와 대공과가 들어섰고 기존 대공업무는 대공과에서 단독으로 담당하고 정보2,3과는 각각 정치·경제·사회 분야와 학원·문화 분야 사찰을 맡았다. 1986년 1월에는 정보과가 정보부로 승격되면서 정보1부와 2부 안에 각각 정보1,2,3과와 4,5과가 생기고 신설된 대공부에는 대공1,2과와 대공수사과가 포함됐다. 그리고 불과 5개월 후 보안경찰은 대공1,2,3부로 대폭 확대됐다. 1991년 5월 치안본부가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개편되면서 정보부는 경찰청 정보국, 대공부는 보안국으로 개편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1)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 사례

경찰은 국정원이나 기무사와는 달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로 민간인 사찰 사례도 대단히 많다. 이에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 당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면, 먼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분회장에 대한 사찰 사건이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이었던 염호석씨는 2014년 5월 17일 강원도 강릉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동료들에게 남긴 유서에는 “지회의 승리를 기원한다”, “노조가 승리하는 날 장례를 치러달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염씨는 부모에게도 “내가 속한 삼성전

자서비스지회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장례를 치러달라”라는 당부를 했다. 염씨의 아버지는 애초 아들의 뜻에 따라 장례 절차를 노조에 위임했고 2014년 5월18일 새벽 2시께 강릉의료원에 있던 아들의 주검을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안치했다. 하지만 아버지 염씨는 삼성전자서비스와 경찰이 집요하게 가족장을 요구하자 6억원을 받고 아들의 주검을 인도받아 부산으로 향했고, 경남 밀양에서 화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보경찰은 삼성 쪽에 노조 움직임과 유족 동향에 대한 주요 정보를 수시로 알려주고 노동조합장례가 아닌 가족장을 치르는 대가로 회사가 마련한 수억원의 돈을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까지 했다. 또 유족이 가족장을 치르도록 설득할 수 있는 지인까지 찾아내 삼성 쪽에 소개해 주기도 하였다.²⁸⁾

또한 정보경찰은 부교육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진보 성향 교육감 견제에 나서기도 하였다. 경찰청 정보국은 2016년 3월 ‘전국 부교육감 인적 쇄신 등을 통한 역할 재정립’(부교육감 재정립)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된 ‘정책보고’로써 수사과정에서 해당자료를 본 참고인은 “부교육감들의 사진과 함께 성향, 대책 등이 적힌 문건이었다. 부교육감들을 우호적, 비우호적으로 나누고 특정 부교육감에 대해서는 ‘진보교육감의 정책에 동조하고 있으니 대학교 사무국장으로 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대책도 적혀 있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 시기는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박근혜 정부와 교육감들이 큰 갈등을 빚고 있을 때로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정보경찰이 부교육감들의 성향을 파악해 인사 조처 등을 담은 문건을 만든 셈이었다.²⁹⁾

뿐만 아니라 인권위 상임위원들을 사찰했을 뿐만 아니라³⁰⁾ 세월호 특조위를 ‘제압’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해 상부에 보고하기도 하는 등³¹⁾ 정권을 위해서라면 공적 인사라도 감시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당시 여당후보를 위한 선거전략을 제안하고³²⁾ 2016년 총선에서는 친박세력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판세를 분석하는 등³³⁾ 정치에도 깊숙이 개입하기도 하였다.

28) 한겨레, 고 염호석 사건, 정보경찰 처음부터 끝까지 삼성 손발 구실했다, 2019.5.14.자,

29) 한겨레, [단독] 박근혜 경찰, 진보교육감 제압 위해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작성, 2019.4.10.자,

30) 한국경제,朴정부 정보경찰, 인권위 상임위원도 불법사찰 정황, 2019.4.22.자,

31) 한겨레, [단독]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세월호특조위 제압 문건’ 만들었다, 2019.4.11.자,

32) 한겨레, [단독] 정보경찰, 서울시장 보선 때 ‘나경원 비선캠프’ 자임 활동, 2019.5.2.자,

33) SBS, [단독] “사실상 ‘친박 후보’ 선거 컨설팅”…정보경찰의 민낯, 2019.5.14.자,

2) 보안경찰의 민간인 사찰 사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보안경찰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감시받지 않을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였다. SNS에 북한을 풍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구속기소된 박정근(최종 무죄 판결), 1980~90년대 인문사회과학 서적들을 모아 만든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이진영(1·2심 무죄, 상고심 진행중) 사건 등은 국가보안법을 명분으로 사찰이 이루어진 사례에 해당한다. 한편 보안경찰이 간첩 수사를 함에 있어 브로커를 돈으로 매수해 각종 증거들을 모았던 정황이 확인³⁴⁾되는데 이는 증거수집이라는 명분으로 브로커를 동원해 불법적인 사찰을 수행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또한 보안경찰은 2011년부터 인터넷 여론조작을 위해 보안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댓글 작업을 벌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정치적 중립성 또는 불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걱정하면서도 ‘왜곡정보’의 전파 정보에 따라 각 단계를 나누어 1단계에는 보안사이버수사요원 88명만을, 2단계 국면에는 경찰 내부 보안요원 1860명 전원을 동원하고 최종 3단계에서는 1, 2단계 경찰 인원과 온라인 보수단체 7만7917명을 동원하는 계획을 작성해 이를 실행했다고 전해진다.³⁵⁾

III. 민간인 사찰의 원인과 문제점

1.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한 반공 체제

해방 이후 한국사회는 국제적 냉전, 남북분단, 한국전쟁 등의 와중에서 분단국가로 형성·고착화되었으며, 급속한 종속적 산업화에 수반될 수 밖에 없는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전개과정에서 반공이데올로기는 단순히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특정 이념영역을 넘어 분단국가의 수립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려는 분단국가주의로서, 그리고 종속적 자본주의와 권위주의체제를 확대·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동의와 억압을 동원하는 국가동원주의로서 기능해 왔다. 반공이데올로기의 기원은 일제식민지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것이 강고한 국가주의로서 자리잡고 사회의 전반적 영역, 심지어 일상생활에까지 침투하게 된 것은 한국전쟁을 경험하고 난 이후이다.³⁶⁾ 전쟁이라

34) 뉴스타파, 간첩 수사 협조자, 보안 경찰을 고소하다, 2015.5.22.자.

35) 한겨레, [단독] 경찰, 사이버→보안요원→보수단체 ‘3단계 댓글공작’ 계획, 2018.3.12.자.

는 죽음과 파괴의 경험을 통해 북한을 실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게 하였고 반공이데올로기는 시민사회에 깊게 자리 잡았았다.

이러한 반공이데올로기 중심의 사회체계가 유지되도록 한 것은 국가보안법이었다. 이 법은 그 의미와 내용에 있어서 여느 다른 법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한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의 사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사상탄압법이다. 그리고 사상탄압법은 인간사고의 결정체인 사상을 정통과 이단으로 가르고, 이단으로 못 박힌 사상에 국가폭력의 칼날을 무자비하게 휘두른다는 점에서 빼어난 의미의 체제유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체제유지법은 지배체제를 현재의 이 시점에서 무조건 그리고 영구히 동결시키려는 집단적 광기가 법규법의 형식을 빌려 표출된 것이다. 지배체제가 체제위협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국가폭력의 동원체계를 미리 조직하는데 본래의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그것이 폭력성을 띠게 되는 것은 개념필연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³⁷⁾

국가보안법을 기반으로 한 반공 체계 속에서 민간인 사찰은 시작되었고 또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다. 특히 호구조사, 요사찰, 공안사범자료와 같은 사찰제도는 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다. 물론 냉전체계가 무너지기 이전인 80년대에 비해 지금은 반공 이데올로기가 다소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주의 하위 이데올로기인 경제성장이데올로기, 안정이데올로기, 자유민주주의이데올로 등과 결합하여 취약한 헤게모니를 보완하고 있으며³⁸⁾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2. 국가가 아닌 정권 안보의 도구였던 공안기구

반공이데올로기를 동원과 통제의 기제로 활용했던 독재 군사정권은 국정원·기무사·경찰 등 공안기관을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를 위해 동원하였다. 즉, 분단상황이라는 냉전의 최전선에서 불가피하게 허용되었던 광범위한 정보활동과 권한이 국가가 아닌 최고 권력자의 안보를 위해 활용되었던 것이다. 공안기관들도 권력자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을 사찰하며 권력을 함께 누려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안기관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더욱 어려웠다. 공안기관, 특히 국정원에 대해 대통령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을 누린 반면 의회은 그 권한이 거

36) 유재일, 분단체제와 극우반공이데올로기의 정치경제학 한국전쟁과 반공이데올로기의 정착, 역사비평 1992년 봄호 (통권 18호), 1992, 139~140쪽.

37) 국순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민주법학 제8호, 1994, 126쪽.

38) 유재일, 위의 글, 140쪽.

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조차도 의회 내의 정파분포에 따라 권한 행사가 좌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³⁹⁾

이러한 이유로 김대중 정부가 등장하고도 민간인 사찰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에는 댓글부대로 동원, 야당세력에 대한 감시 등 과거의 악습이 다시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태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과정을 왜곡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력화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배제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할 것이다.

3. 정보수집과 수사권한의 미분리

공안기관들의 개혁을 논의할 때 하나의 기관이 수사권한과 정보수집권한을 함께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독일의 ‘분리원칙(Trennungsgebot)’이 자주 거론된다. 이 원칙은 독일 나찌 당시에 활동했던 게슈타포의 사례를 반성하면서 전후 독일에서 구체화된 것이다. 게슈타포는 제국안전중앙청(SS)에 속해있던 비밀경찰로, 나찌에 반대하는 모든 적대적 정치행위를 감시하고 그 결과를 예측·평가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실질적으로 국내정보기관으로서의 임무도 담당하고 있었다.⁴⁰⁾ 하지만 전후 미국·영국·프랑스 서방 3개국 공동군정은 강력한 정보-집행 권한의 융합을 바탕으로 게슈타포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전체주의를 강화하던 도구로 쓰인 점을 간파하고 경찰-정보기관의 분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였다.⁴¹⁾

한국의 공안기관, 즉 국정원, 검찰, 경찰, 기무사 등은 이 원칙에 역행한다. 정보기관은 수사 권한을, 수사기관은 정보수집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각 부서들은 과도한 권력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중정을 만든 김종필의 고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혁명정부는 이제 출범했다. 아직 뿌리를 단단히 박지 못한 상태였다. 외부 세력이 혁명에 반기를 들고 있어난다면 얼마든지 혼들릴 수 있었다. 그런 것을 막고 혁명정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북한의 위협에도 대비해야 했다. 중앙정보부에 수사권을 부여하자. 혁명의 정착을 효과적으로 보조하려면 힘이 있어야 했

39) 국정원,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 정치·사법편(IV), 11~12쪽.

40) 박병욱, “독일 나찌시대 제국안전중앙청의 긴 그림자-경찰과 정보기관간의 분리의 원칙”, 경찰법연구 제11권 제2호, 2013, 254쪽.

41) 박병욱, “독일 나찌시대 제국안전중앙청의 긴 그림자-경찰과 정보기관간의 분리의 원칙”, 251쪽.

다. 여러 고려와 고심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이었다. (중략) 중앙정보부법은 9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핵심은 정부 각 부처 정보 수사 활동의 조정·감독권(1조)과 수사권(6조)이다.”

“중앙정보부는 수사권을 가지고 무서운 존재로 혁명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했다. 나는 정보부에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부여할 계획이었다. 정보부가 수사권을 쥐면 미국의 CIA와 연방수사국(FBI)의 권한을 모두 갖게 된다. 그런 예외는 혁명정부에서만 유효해야 했다. 최고회의에서 입법 취지를 설명할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수사권은 혁명정부 기간에만 잠정적으로 갖는 겁니다. 민간정부가 정식 출범한 뒤엔 수사권은 법무부 수사국에 환원시킵니다.”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나는 1963년 1월 정보부장직을 내놨다. 그해 12월 민정으로 이양했지만 정보부는 수가권을 유지했다.”⁴²⁾

‘한국판 CIA’를 지향했던 중정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보·조정·수사권을 모두 가진 ‘한국판 KGB’가 되었고⁴³⁾ 이는 국정원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정보기관인 국정원과 기무사는 대공수사 기능을,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은 정보수집 기능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이는 권력의 비대화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빈번한 민간인 사찰과도 연관된다. 민간인 사찰이 들통날 때마다 이들은 불법사찰이 아니라 용의자에 대한 정보수집, 정당한 수사라고 항변해 왔다. 특히 기무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함에도 군인인 용의자와 관련되기 때문에 수사한 것이라고 변명하기도 하였다. 정보수집과 수사 권한의 동시 보유는 민간인 사찰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IV. 나가며 – 민간인 사찰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러한 민간인 사찰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 대안은 이미 많은 이들이 제시한 바 있다. 헌법학자인 오동석은 사찰이 한국의 헌정질서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대응 역시 헌법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 ‘부패방지 및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공익제보자 보호법 제정과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국가보안법제 정비’, ‘군 관련 법제 정비’를 제안하였다.⁴⁴⁾ 국정원에 대해

42) 김종필 증언록, 소이부답(15) : 한국판 CIA의 출범, 중앙일보, 2015.4.3.자; 김당, 시크릿파일 국정원, 메디치, 2016, 57쪽에서 재인용.

43) 김당, 위의 책, 58쪽.

44) 오동석, 위의 글, 86~96쪽

오랜 연구를 진행해 온 한홍구의 경우 국정원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개혁, 인적청산, 과거청산, 사용자인 대통령 태도 변화’ 등 네 가지 영역의 개혁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는데 매번 불완전하게 끝났음을 지적했다.⁴⁵⁾ 또한 김당은 국가정보기관의 개혁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국정원 기능의 분리’, ‘민주적 통제와 정보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⁴⁶⁾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국정원⁴⁷⁾ 및 경찰 관련 개정법안들이 국회에 이미 상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인 사찰을 막기 위한 기관별 개선안을 ‘권한 축소’와 ‘통제 강화’ 차원에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공안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의 총량을 축소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공안기관들에 대한 개혁방안 논의는 각 기관들에 맡겨 놓는 방식이었다. 즉, 국정원은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 검찰은 법무부 산하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대검찰청 산하에 <검찰개혁위원회>를 두고 각자 개혁작업에 나섰으며⁴⁸⁾ 이로 인해 한 기관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볼 뿐 공안기관 전체를 사고하지 못했

45) 한홍구, 추천의 글, 김당, 위의 책, 5쪽.

46) 김당, 한국의 국가정보기관, 문정인 편저, 국가정보론, 박영사, 2005, 594~599쪽.

47) 국정원은 민간 전문가와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TF>, <조직쇄신TF>를 설치해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조직 개혁작업에 나섰다. 그 결과 국내정보 수집을 중단하도록 하고, 명칭을 국가정보원에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며 정보수집 방법·수단을 열거한 「국가정보원법」 개정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해 2017년 11월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조항	주요 내용
명칭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
직무규정	·규정신설 = 1호(국외정보)·2호(북한정보)·3호(방첩)·4호(대테러)·5호(방위산업침해)·6호(경제안보침해)·7호(사이버공격)·8호(국제범죄조직)·9호(초국가행위자)·10호(국가 및 공공기관)·11호(조사)
직무범위	·직무 범위 명확·구체화 =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국내 보안정보'란 용어 삭제 = 대공·대정부전복 삭제…대공수사권은 다른 기관으로 이양 = 북한정보·방위산업침해·경제안보 침해·국가 및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예방 = 형법 중 내란·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암호부정 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상 죄, 국가보안법(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제외)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 행위 ·정보수집 방법·수단을 예시해 열거 = 정보수집 등에 필요한 조사 및 대응활동 = 공무소(公務所) 기타 공·사단체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및 자료 협조 요청 =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및 통신제한 조치 = 불법 감청 등 금지
예산회계	·예산집행의 투명성·통제 강화 = 비밀활동비의 다른 기관 계상 시 편성 및 집행결산에 대한 정보위 심사 준수 = 모든 예산집행 시 증빙서류 첨부(단, 기밀 요구될 시 예외) =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신설 = 분기별 예산집행 현황을 정보위에 보고. 일정 규모 이상 예산 변경 필요하면 정보위의 사전승인·사후보고
기타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 신설 = 직무 범위 일탈한 정보수집 금지 및 처벌(1천만원 이하 벌금)

연합뉴스, [표] 국정원법 개정안(대외안보정보원법) 주요 내용, 2017.11.29.자,

48) 기무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이 바뀌었을 뿐 무엇이 어떻게 바꿨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보안사가 기무사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악행에 대해 전혀 교정하지 못했던 1991년 상황이 떠오른다.

다. 그러다보니 시민을 억압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공안기관들의 전체 업무 중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살릴지, 업무 총량은 얼마나,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어떤 기관의 업무를 이관할 경우 이것을 어디로 이관할지, 이관받은 기관의 비대화는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국정원·기무사·경찰과 같은 민간인을 사찰하였던 기관들은 그 권한이 여전히 비대하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권한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의 제도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앞서 소개한 ‘정보수집-수사 권한분리원칙’이 주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① 즉, 국정원, 기무사는 정보수집 권한만 부여하고 수사권은 회수하며, 경찰에는 수사 권한만 갖게 해야 한다. 특히 경찰의 경우 보안경찰을 ‘보안수사본부’로 격상시킬 것이 아니라 수사국 산하부서로 옮기고 정보경찰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기무사는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사건 관련자가 민간인일 경우 즉시 관여를 중단하고 경찰로 사건을 이양해야 한다. ② 다른 한편으로 국정원의 경우 정보수집 기능과 판단분석 기능을 분리하여 내부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을 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리는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킴으로써 권력 남용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보다 좀 더 용이하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⁴⁹⁾

그리고 공안기관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① 국회 정보위원회 권한을 강화하여 국정원을 감시·통제하고 기무사와 경찰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옴부즈만을 신설해 감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예산에 대한 감시를 통해 업무에 대한 통제도 일정부분 가능함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 기관의 업무특성상 일반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나 적절한 외부의 감독 없이 내부의 감사에만 의존하는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⁵⁰⁾ 이를 위해 국회 정보위, 감사원이 특히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또한 이들이 불법 행위를 거침없이 저지르는 이유 중 하나가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들도 활동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남기도록 강제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민들에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49) 마르틴 쿠차, 이계수 역, “독일의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민주법학 제12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7), 279쪽.

50) 김당, 위의 글, 598쪽.

서론에서 푸코가 주장한 규율사회에 대해 파놉티콘 체제를 가지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컴퓨터가 생활 속에 퍼지고 각종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기 시작하였고 CCTV 등 전자기기를 통한 감시도 확산되었으며 90년대 이후에는 인터넷 패킷을 중간에 가로챌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감시 체계는 전자 파놉티콘, 혹은 정보 파놉티콘으로 명명되었고 이제 정보는 벤담의 파놉티콘에서의 시선을 대신해서 규율과 통제의 기제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들뢰즈(Gilles Deleuze)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푸코의 규율 사회를 벗어난 새로운 “통제 사회” (control society)라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규율사회는 증기 기관과 공장이 지배하며 요란한 구호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였지만, 통제 사회는 컴퓨터와 기업이 지배하고 숫자와 코드(code)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정보 파노티콘으로의 변화는 민간인 사찰에 대한 우리의 사고를 전통적인 사례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더 넓혀야 함을 의미한다. 이미 2004년부터 국정원은 인터넷 활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패킷 감청’을 무수히 저질렀다. 패킷 감청시 인터넷 회선을 통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모든 정보가 패킷 형태로 무차별 수집돼 수사기관에 전송되며 이를 통해 해당 회선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로그 기록과 인터넷 검색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시 심각한 민간인 사찰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감시당하는 자가 감시자를 역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길도 크게 넓혀 놓았다. 이는 파놉티콘을 권력자를 견제하는 메커니즘으로 탈바꿈시킨 것으로 역파놉티콘(Reverse panopticon)이라고 부르며 소수의 감시자와 다수의 피감시자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두가 서로를 감시하는 상황이 조성되어, 권력자와 대중이 동시에(syn) 서로를 보는 메커니즘이라는 면에서 시놉티콘(Synoptic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⁵¹⁾ 이처럼 정보 파놉티콘으로 변화는 시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감시의 도구가 될 수도, 역감시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51) 홍성욱, 벤담의 파놉티콘(Panopticon)에서 전자 시놉티콘(Synopticon)까지 : 감시와 역감시, 그 열림과 닫힘의 변증법,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3권 제1호, 2001, 88~91쪽 요약.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의 문제점

류하경 변호사

본 발제문에서는 ①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내용을, 고소고발 요지를 통해 설명하고,
② 최근 군사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기무사 피고인들의 판결문 내용을 소개하면서 기무사 사찰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I. 피해사실 (고소고발내용)

1. 개요

가.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는 기무사 내 ‘세월호 TF’를 만들어서 세월호 유가족을 감시하고 사찰했다. 이에 피해자인 세월호 유가족들은 2019. 12. 24. 고등검찰청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위 내용을 고소고발했습니다. 죄명은 개인정보법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나. 기무사 내 세월호 TF는 2014. 4.경부터 10.경까지 TF장(참모장, 피고소인 김대열)을 중심으로, 현장지원팀장(1처장, 피고소인 손정수), 정책지원팀장(정보융합실장, 피고소인 지영관), 예하 제610 및 310부대장(진도, 안산 관할 기무부대, 피고소인 소강원, 김병철) 등으로 구성되었던 조직으로, 현장지원팀장은 기무사가 소위 종북세력이라 칭한 ‘불순세력 침투분야’를, 정책지원팀장은 BH 보고서 작성 및 여론 관리를, 예하 제610 및 310부대장은 진도, 안산 지역의 세월호 유가족 등 사찰업무를, 소속 부대원들에게 각지시하였고 소속 부대원들은 사찰첩보 등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기무사 내 정보보안반 등은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온라인 사찰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다. 국군기무사령부는 1948. 5.경 대공 업무와 간첩 겸거 등을 담당하기 위해 창설된

육군 정보국 특별조사과를 그 모태로 하는 특무부대로 창설되어, 대통령령인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첩보의 수집·작성·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장관 소속 부대(국군기무사령부령¹⁾ 제1조, 제2조 참조)였으나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지난 2018. 8. 21.경 해편되었다.

2. 피고소고발인들 목록

피고소인 김대열은 1984. 3. 28.경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3. 10. 25.경부터 2015. 10. 27.경까지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임.

피고소인 지영관은 1986. 3.경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3. 11. 7.경부터 2014. 11. 11. 까지는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²⁾장으로(이 사건 세월호 TF에서는 정책지원팀장을 담당함), 2014. 11. 12.경부터 2015. 10. 27.경까지는 위 사령부 1처장(예비역지원과를 총괄 지휘하는 부서장)으로, 2015. 10. 28.경부터 2017. 9. 30.까지는 위 사령부 참모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임.

피고소인 소강원(소장)은 1984년경 소위로 임관하였고, 2008. 10.경 대령으로 2015. 11. 경에는 준장으로 각 진급하여, 2017. 12.경부터는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 이 사건 당시 광주·전남지역 관할 제610 기무부대장을 역임하기도 하였음.

피고소인 김병철(준장)은 이 사건 당시 경기·안산지역 관할 제310 부대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임.

피고소인 손정수(대령)는 이 사건 당시 세월호 TF 현장지원팀장(1처장)으로 활동하였던 자임.

1) 2018. 8. 21. 대통령령 제2911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2) 기무사 정보융합실은 사령부 각처 및 예하 부대를 통해 수집된 정보 등을 분석하고, 대통령·대통령실장·국가안보실장·수석비서관·국방부장관 등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기무사 첨보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기무사의 각종 공작활동 계획이나 작전을 수립하는 부서입니다.

피고소인 박태규(대령)은 이 사건 당시 세월호 TF 현장지원총괄을 담당하였던 자임.

국군기무사령부 1처(1처장 피고소인 손정수), 정보융합실, 정보보안반, 예하 제610 및 310부대는 기무사 내 세월호 TF를 구성하였던 주요 기무부대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 등이 자행되었다고 확인된 2014. 4.경부터 2014. 10.경 사이에 해당 부대에 재직하였던 성명불상의 소속 부대원들을 모두 피고소인으로 삼았음.

피고소인 성명불상의 국군기무사령부 1처, 정보융합실, 정보보안반, 예하 제610 및 310 부대의 각 소속 부대원들³⁾은 이 사건 당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자들임.

한편, **이재수**(2018. 12. 7. 사망)는 1981. 3. 28.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3. 10. 26.경부터 2014. 10. 16.까지 국군기무사령부 41대 사령관(중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임.

피고소인 박근혜는 2013. 2. 25.부터 2017. 3. 10.까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장을 지휘·감독한 자,

피고소인 김기춘은 2013. 8.경부터 2015. 2.경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실장(이하 ‘비서실장’이라 한다)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 자,

피고소인 김장수는 2013. 2.경부터 2014. 6.경까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자,

피고소인 김관진은 2010. 12.경부터 2014. 6.경까지 제43대 국방부장관을, 2014. 6.경부터 2017. 5.경까지 국가안보실장을 각 역임한 자,

3) 이들은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4. 4.경부터 2014. 10.경까지 해당 처·실 또는 부대에 소속 부대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들로, 기무사 내 세월호 관련 TF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사찰 등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을 비롯하여 가족대책위의 집회 등 정보를 보수단체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업무를 방해한바, 현재까지 이들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피고소인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피고소인 한민구는 2014. 6.경부터 2017. 7.경까지 제44대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자임.

위 피고소인들은 이하에서 후술하듯이 전체의 모의과정을 통하여 뿐 아니라, 순차 공모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넘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는 등의 첩보업무를 지시·수행한 자들임. 이하에서는 항을 나누어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 사찰로 나아간 경위 및 그 내용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

가. 기무사의 직무범위

기무사는 대통령령인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작성·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장관 소속 부대로, 기무사에 대해서는 국내정치 관여,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바 그 직무범위, 특히 첩보활동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군기무사령부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군 및 군 관련 첩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에 한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령상 기무사의 직무범위]

국군기무사령부령 제3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보안업무 및 군 방첩업무
 - 가. 군 보안대책 및 군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개선 지원
 - 나.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 다.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
 - 라.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군무원, 시설,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업무
2. 군 첩보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관련 첩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
 - 가. 국외·국내의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첩보
 - 나. 대(對)정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첩보
 - 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 연구소 등 국방부장관의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첩보
 - 라. 군인 및 군무원,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부사관 임용예정자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관한 첩보
3.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情報戰) 지원
4.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중 국방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6.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업무 지원
7.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지원

기무사는 정보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그 본질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큰바, 위 국군기무사령부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명시적으로 열거한 첨보와 무관한 첨보에 대해서는 관여하거나 개입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나. 기무사의 지휘체계 및 첨보 수집·작성·처리 절차

기무사는 각종 첨보의 유일한 사용권자이자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감독하는 국군기무사령관과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총괄 조정·통제하며 사령관의 직무를 대행할 권한을 가진 참모장을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며 그 휘하에 처와 실, 그리고 예하 기무부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보융합실은 사령부 각 처 및 예하부대를 통해 수집된 정보 등을 분석하고, 대통령·대통령실장·국가안보실장·수석비서관·국방부장관 등(이하 '청와대 관계자'라고 합니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기무사 첨보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기무사의 각종 공작활동 계획이나 작전을 수립하는 부서입니다.

기무사에서 생산되는 군 첨보 및 군 관련 첨보에는 국군기무사령관에게 보고되는 대내용 보고서와 청와대 관계자에게 보고되는 대외용 보고서가 있고, 기무사의 첨보 수집·작성·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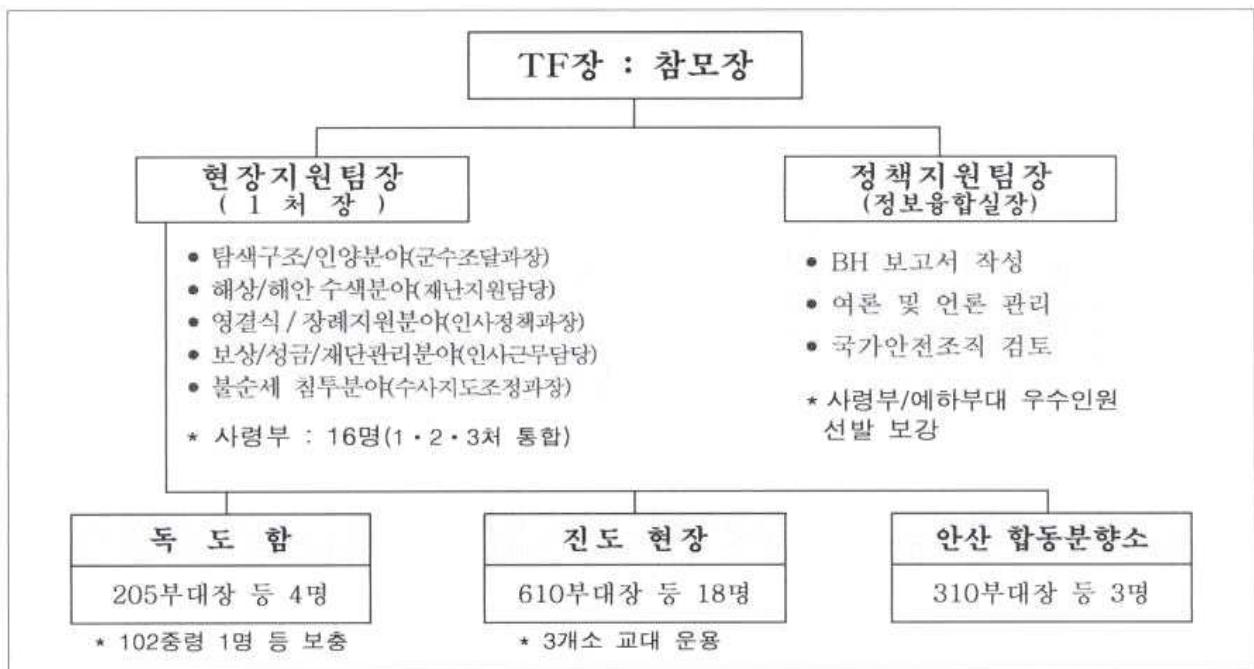
사령부 본부 및 예하 기무부대 소속 수집관들은 사령관 등 상관의 지시에 따라 첨보를 수집하여 첨보관리시스템(TIS)에 등재하고, 사령부 본부 각 해당 부서에서는 위 첨보들을 종합하고 추가 첨보를 수집하여 보고서로 작성한 다음 '과장→차장→처·실장→참모장→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지휘계선에 따라 결재를 받아 정보융합실에 송부하며, 정보융합실 분석관은 위와 같이 송부된 보고서를 수정·검토 및 추가 첨보 수집 지시와 피드백 등의 과정을 거치거나 직접 청와대 동정 또는 청와대의 요구사항을 파악하

여 이와 관련된 첨부 수집 지시와 피드백 등의 과정을 거쳐 ‘과장→차장→정보융합실장→참모장→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정보융합실의 지휘계선에 따라 결재를 받은 뒤, 이를 사령관이 직접 청와대 관계자에게 보고하거나 사령부 본부 및 예하 부대 등으로 전파하여 보고서상 수립된 계획이나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피고소인들은 순차 공모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세 월호 민간인 사찰 등 첨보활동 과정에서 부대원들의 첨보 수집·작성·처리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다. 기무사 내 ‘세월호 TF’ 운영

[기무사 내 세월호 TF 조직도]



기무사는 2014. 4. 28.경 세월호 관련 현장상황 파악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2014. 5. 13.경에는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관련 TF’로 확대운영하는 등, 2014. 10. 12.까지 약 6개월에 걸쳐 해당 TF를 운영하였습니다. 세월호 관련 TF는 당시 참모장이었던 피고소인 김대열을 TF장으로 하여 사령부 및 현장 기무부대원 총 60명으로 구성되었고, ① 유가족 지원, ② 탐색구조·인양, ③ 불순세력 관리 등으로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증 제1호증 국방부 보도자료 “기무사의 세월호 사건 관여 문건 발견” (2018. 7. 2.) 참조}.

‘기무사의혹 軍 특별수사단’ (2018. 7. 16.자 출범, 이하 ‘軍 특수단’이라고 합니다)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하여 수사하여, 위 기무사 내 세월호 TF는 세월호 참사 이후 6. 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정부의 국민보호의무 소홀, 초기대응 미흡 등의 사유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당시 박근혜 정부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와 같은 정국을 조기전환하기 위한 출구마련과 VIP 지지율 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는 등 관련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고 밝혔습니다{증 제2호증 국방부 보도자료 “前.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수사결과” (2018. 11. 6.) 참조}.

2014. 5. 10.자 BH 보고 ‘세월호 관련 주요쟁점별 조치방안’ 중 일부
(증 제2호증 참조)

여론 및 PI 관리 방안

□ 고려사항

- ① 6·4 지방선거 以前 국면전환을 위한 출구전략 마련
- ② 향후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對정부 신뢰 제고 및 VIP 지지율 회복

라. 세월호 유가족 사찰

1) 세월호 유가족 사찰 관련 주요 내용

이재수(당시 기무사령관)를 비롯하여 피고소인 김대열, 지영관 등은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제610기무부대장 피고소인 소강원, 경기·안산지역을 관할하는 제310기무부대장 피고소인 김병철 및 소속 부대원들을 동원하여 지역별, 기능별로 사찰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행위를 조직적으로 분담하였는바,

피고소인 소강원은 유가족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첨보를 수집하여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소속 부대원들에게 지시하여 팽목항, 진도체육관에서 직접 당시 실종자 가족들을 관찰하거나 당시 지원 공무원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게 하였습니다{증 제3호증 국방부 보도자료

34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세월호 유가족 사찰 주요 내용(증 제3호증 참조)]

- 유가족의 분위기 파악(특정 조치에 대한 불만, 과격 등을 보이는 세월호 유가족의 가족 관계와 특이내용 등)
-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 파악(‘진도 지역 실종자 가족들의 경우 가족들을 위한 구강청결 제 대신 죽염을 요구하였다’ 등)
- 유가족 사생활 파악(TV 시청 내용, 일부 유가족의 야간 음주 실태 등)
- 유가족 성향 파악(‘강성, 중도, 온건’으로 분류 등)

기무사는 아래와 같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내용을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이라는 문건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기도 하였습니다(증 제1호증 참조).

기무사 작성,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문건(증 제1호증 참조)

-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대표 인물의 성명, 관계, 경력 등을 정리하고
성향을 강경·중도 등으로 분류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 실종자 가족 : 대표 [REDACTED] (45세) / 실종학생 [REDACTED] 父

- [실종자 대 2명이 가구로 [REDACTED]]
○ 실종자 11명(10가구)의 가족들이 팽목항(3가구)과 체육관(7가구)에 상주
[REDACTED] 학생 [REDACTED] 학생 父
○ [REDACTED] 등 2명이 ‘전원 수습’을 강하게 주장하며, 새로운 잠수기법 도입 및 특징구역 수색 요구
* 나머지 가족들은 은근한 편이나, 강경 성향자 2명에 끌려다니는 분위기

※ [REDACTED] · [REDACTED] 氏의 이성적 판단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태로, 심리 안정을 위한 치료대책 강구 및 온건 성향자부터 개별 설득 필요

□ 가족대책위

- | 구 분 | 위원장 | 구 성 원 | 사무실 위치 |
|---------------|------------|----------------|--------|
| 피해자 가족대책위 | [REDACTED] |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 인천 |
| 일반인 회생자 가족대책위 | [REDACTED] | 일반인 회생자 가족 | 인천 |
- 5.7. 유가족 보상 및 진상규명을 위해 4개 분과위 30명으로 발족
* 분과위 : ① 정례자원·의사자지정 ② 진상규명 ③ 가족 지원 ④ 실리치료
* 일반인 회생자(39명) 中 22명의 유가족들은 단원高 회생자에 비해 홀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5.16. 별도 가족대책위 결성
○ 5월 이후 정치·종교계 저명인사 면담, 천만명 서명운동, 촛불집회 등 국민적 관심 유도 및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對外활동에 치중
*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전 생애주기 지원, 회생자 전문 의사자 지정 등 요구
* 일반인 유가족들은 별도 추모공원 조성, 피해자 범위 확대 등을 추가로 요구
○ 7.12.부터 특별법 제정시 가족대책위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단식농성, 국회 진입 시도 등 과격 행동 표출

※ 특별법이 보상·혜택 범위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死力を 다할 것으로 전망

【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대표 인물 】

실 종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함 / 성향 : 실종자 가족 대표 / 강경 • 성명 / 관계 : [REDACTED] (45세) / 실종학생 [REDACTED] 父 • 경력(직업) : 공사장 식당에 음료수 납품 • 4대 독자 희생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 지대
가 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향 : 강경 • 성명 / 관계 : [REDACTED] (45세) / 실종학생 [REDACTED] 母 • 실종자 가족들의 어른 주도, 실질적 대표자격 행사 * 남편도 妻의 극단적 행동에 부당 토로, 같이 있는 것을 기피
가 족 대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함 / 성향 : 가족대책위 위원장 / 중도 • 성명 / 관계 : [REDACTED] (52세) / 회생학생 故 [REDACTED] 父 • 경력(직업) : 지게차 운전사로 근무터 현재 무직 • 5.20. 팽목항에서 '對국민 호소문' 낭독 등
족 대 책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함 / 성향 : 가족대책위 대변인 / 강경 • 성명 / 관계 : [REDACTED] (46세) / 회생학생 故 [REDACTED] 父 • 경력(직업) : 정의당 당원 • 과거(13.11월) VIP 비방글 게시 / 5.16. VIP 면담시 유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을 강하게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함 / 성향 : 일반인 가족대책위 위원장 / 강경 • 성명 / 관계 : [REDACTED] (41세) / 일반인 故 [REDACTED] 子 • 경력(직업) : 인천 자월동에서 편선·낚시배 운영 • 5월 이후 청와대 시위 주도 및 일반인 회생자 장례식장내 정부弔唁 철거 조치

2) 610부대 실종자 가족 사찰

피고소인 소강원은 610부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관련하여 개인별 현장임무를 부여하고, 적발시에는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위장’ 등 활동지침을 하달하였으며, 실종자 가족이 주로 머물던 진도체육관 등에서 실종자 가족 개개인의 성향(강성, 중도), 가족관계, TV 시청내용, 음주실태, 실종자 가족 중 여론 주도자 식별 등 유가족 사찰 관련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2014. 4. 21.자 작성, “부대장님 지시사항입니다” 610부대원 이메일 종 (증 제2호증 참조)

○ 동정파악 중점

-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사항·정부측 대책반과 실종자 가족 대표간 토의내용, 가족들 반향·특이언동
- 시신 입항현황·민간 잠수부들의 인터뷰 내용 및 가족대상 설명 내용
- ④ 관련 지원(임시안치소 운영) 사항간 문제요소 여부
- 반정부선동자·유언비어유포자 등 색출

○ 물의방지 대책

- 핸드폰 소지하되 패턴 지정 및 카카오톡 잠금장치 후 활용
- 통화/문자 보고시 충성구호 등 ④ 관련 용어사용 금지
- 문자 발송시는 현장을 이탈하여 송수신 후 즉시 삭제조치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사복착용 사전)외 일체의 신분증 소지 금지
- 우발상황 대비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위장 및 답변

3) 310부대 생존학생·유가족 단체 등 사찰

피고소인 김병철은 310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관련한 임무부여를 통해 안산시 등지에서 유가족 및 단원고 복귀학생의 동향,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정치성향·가입정당, 합동분향소 주변 시위 상황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였습니다(증 제2호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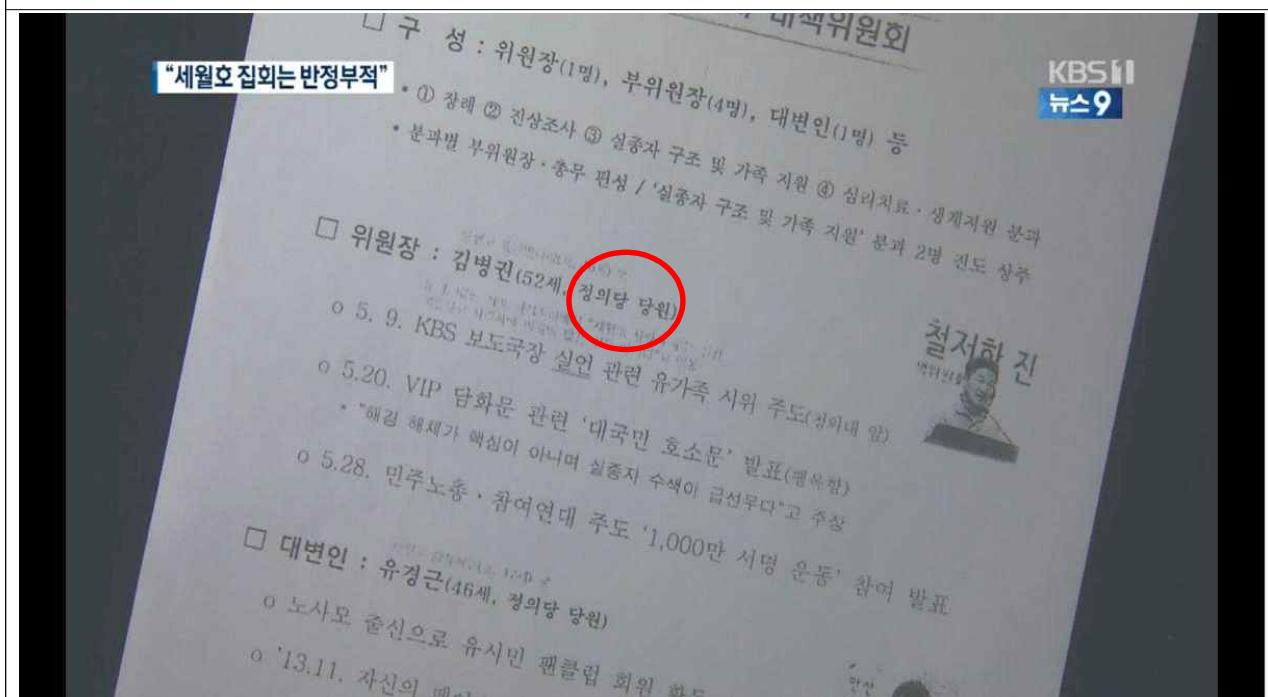
2014. 5. 29.자 작성, “세월호 유가족 대표 및 대변인 관련 확인결과(310)” 중
(증 제2호증 참조)

가. 유가족 대표(□)

- 과거 반정부적 활동 전력은 없으나 사회비판적 시각 포지
 - □ 운영 경력 및 □에서 □를 운영하는 등 평범한 직업 출신이나 성향은 사회비판적임.

기무사 소속 부대원들은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을 특정 정당(정의당)의 당원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문건을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증 제4호증 KBS 뉴스, 세월호 사찰 수사기록 단독 입수…참사 6일 만에 “종북 좌파”, (2019. 5. 6.) 참조4).

기무사 작성, 가족대책위 위원장을 ‘정의당 당원’이라고 기재한 문건
(증 제4호증 참조)



4) 기무사 내 사이버 활동부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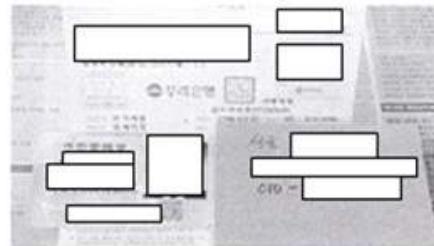
기무사 내 사이버 활동부대인 oo부대 정보 oo반은 구글 검색 등을 통해 유가족 개인 별 인터넷 기사뿐만 아니라 전화번호, 학적사항, 중고거래 내역, 인터넷 카페활동 등을 수집하여 보고함으로써 ‘사이버 사찰’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증 제2호증 참조).

4)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698750>

2014. 7. 8.자 작성, “세월호 실종자 가족 관련 사이버상 공개정보 확인결과” 증
(증 제2호증 참조)

□ [] 확인 결과([])

- 네이버 닉네임 : [] ('12), [] (현재)
- 생년월일 : [] ([] 세)
- 핸드폰 : 011 [] ('08), 010 [] ('10~'12)
- 대학교 : [] 대학교 [] 학부 [] 학번([])
- 거주지 : 서울특별시 []
- 군 복무 : 육군 [] 시단 [] 대대 [] 대대([] 초반 전역)
- 카카오톡 ID : []
- 네이트온 ID : []
- 이메일 주소
 - [] @naver.com ('08~'11)
 - [] @naver.com (현재)
 - [] @nate.com (현재)
- 개인블로그
 - blog.naver.com/ [] (과거)
 - 본인소개(긍정적이지만 다혈질, 웃을 잘 입음) 및 전공분야 글 등 총 10건 게재
 - blog.naver.com/ [] (현재)
 - 아이폰 바탕화면 글(사진) 2건 게재
 - cyworld.com/ []
- 네이버 활동 카페
 - cafe.naver.com/ [] (미나리)
 - cafe.naver.com/ [] (광터)
 - cafe.naver.com/ [] (중고나라)
 - cafe.naver.com/ [] (컵&스택)
 - cafe.naver.com/ [] (TWINS)
- 기타 사항
 - 대학시절 HSK(한어수평고시), 경제, 감정평가사, 재무회계 등을 공부함.
 - 중고거래카페 内 옷, 선글라스, 신발 등 패션 아이템과 자격증, 수강증 등 공부와 관련된 책들을 주로 거래하고 있음.
 - 중학교 때부터 엘지트윈스 팬이었음.



라.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업무를 방해함

- 1) KBS 뉴스는 지난 2019. 5. 6. 軍 특수단의 수사기록 중 기무사가 유가족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였다는 문건을 보도하였습니다(증 제4호증 참조).
- 2) 기무사는 2014. 4. 21.경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종북 좌파들이 반정부 선동 및 국론분열 조장 등 체제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간첩을 방지하는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들은 ‘종북세(력)’ 이 사망(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반정부 활동을 조장할 수 있는바, 종북좌파의 동정을 확인하는 것을 활동의 중점으로 두고, 진도지역에 610부대 21명, 안산지역에 310부대 2명을 각 배치하겠다는 활

동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증 제5호증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관련 방첩활동 계획 (2014. 4. 21.) 참조}. 해당 문건에서 기무사는 안산지역 단원고 선·후배, 지역 주민들의 촛불시위 등을 '반체제 징후'로 판단하였습니다.

**기무사 작성(2014. 4. 21자),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관련 방첩활동 계획
(증 제5호증 참조)**

[풍우 | 未 풍개] 14. 4. 21. (월)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관련 방첩활동 계획

진도 해상의 여객선 침몰과 관련 北·從北좌파들이 反정부 선동 및 국론분열 조장 등 체제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첩활동 계획임.

□ 활동 계획

【 1단계 : ~ 구조 / 인양 작전 완료시 까지 】

- 진도지역 : 21명(610부대)
 - 사망(실종)자 가족 접근 反정부 활동 조장 불순세 차단(범정부 사고 대책본부 활용)
 - 투입 軍장병(예비역) 대상 從北좌파 활동 동조자 확인
 - 해경·경찰 등 유관기관 긴밀 공조下 지역내 좌파단체 활동 추적 등
- 안산지역 : 2명(310부대)
 - 시신 안치장소(8개소) 유가족 대산 反전부 활동 입수(재난안전대책본부)
 - 단원高 선·후배, 지역 주민들의 촛불시위 등 反체제 징후 포착
 - 안산지역 여론 순화 유도(안보보훈단체) 등
- 사이버 활동 : 10명(3차 7과)
 - 국내외 사이트·블로그·트위터 검색, 反정부 선동 및 남남갈등 조장 게시 글 색출
 - * 해외 北 직영사이트(19)·친북사이트(35), 국내 從北·친북 사이트(184), 블로그·트위터 등
 - 軍 지원 인력 활동 관련 불만 여론 등 對軍 불신감 유발 가능 문제점 발굴

3) 이후 기무사는 2014. 5. 13.경 작성된 문건에서도 지속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집회에서 반정부 여론이 조성된다는 취지로 종북세(력)의 활동실태를 기록하면서, 보수단체들에 '종북세(력) 준동 대비 언론기고·맞대응 집회 등 정부지지 활동을 요청'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증 제6호증 안보단체, 세월호 관련 종북세 반정부 활동에 대비 긴요(2014. 5. 13.) 참조}.

4) 기무사는 보수단체들이 위 좌파집회에 대항하는 맞불집회를 열 수 있도록 소위 '좌파집회' (시민단체 집회 등) 정보를 달라는 요청에 응하여 세월호 사건 관련 시국집회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증 제1호증 참조).

**[기무사, 세월호 집회 대응 보수단체의 맞불집회 위한 시위정보 제공]
(증 제1호증 참조)**

회장의 좌파 활동정보 요청 관련 협조 결과	진보단체 집회 시위 관련
<p><input type="checkbox"/> 회장 요청 내용(3.5. 사령부 방문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DACTED]는 좌파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여 종북勢 맞불 집회 개최 中• 반면, [REDACTED] 보수단체임에도 관련 정보가 없어 적시적인 대응 곤란 <p>※ 좌파 시위계획 등 좌파 대응을 위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 여망</p>	<p><input type="checkbox"/> 관련 내용(1건)</p> <p>o [REDACTED] 세월호 추모 집회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 시 : '14. 4.26.(토) 18:30~- 장 소 : 동화면세백화점 앞- 참석자 : [REDACTED] 진보단체 회원 400~500여명
기무사, 좌파집회 정보제공 협조	2014. 4. 26. 세월호 추모집회 정보제공

5) 기무사는 2014. 5. 29.경 작성한 ‘종북세 촛불집회 확산시도 차단 대책’ 문건에서, 종북세력이 세월호 피해자 대책위와 연계하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000만명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바, 이를 대정부 총공세로 판단하고, 보수세(력) 결집을 통한 조직적 맞대응이 필요하다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증 제7호증 종북세 촛불집회 확산시도 차단 대책(2014. 5. 29.) 참조).

마. 세월호 유가족 사찰 첨보를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보고함

과거 기무사 소속이었던 피고소인들은 2014. 4.경부터 2014. 10.경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의 개인정보 및 동향을 사찰하여 첨보를 파악한 다음 청와대 관계자들(피고소인: 박근혜, 김기춘,김장수, 김관진, 한민구 등)에게 보고하고, 지휘·감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증 제8호증 mbc 뉴스, 기무사 ‘세월호 사찰’ 문건, “朴 대통령에게 보고” (2018. 7. 17) 참조⁵⁾).

2014. 7. 6.자 기무사 회의록{현안업무 회의(7. 6. 09:00~10:00) 결과}에 따르면, 이재수 당시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TF의 주요 간부들을 소집하여, “세월호 현장수습, 유병언 검거 모두 진척이 안 되고 있다. VIP(박근혜)께서 휴가를 못 가시고 다른 정부부처들도

5) https://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702832_30181.html

못 가고 있다”,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으시는 분이 주말까지 시간을 내 보고하러 와 놓고는 이것뿐이냐며 한숨을 쉬었다.”, “VIP까지 보고되는 만큼 보고서에 정확한 제목을 사용하라.” 고 지시하였습니다.

기무사는 세월호 TF를 만든 뒤 2014. 5.경부터 2014. 10.경까지 약 80개의 문서를 생성하였고, 그 중 35개는 ‘중요문건’으로 분류되어 청와대에 보고되었습니다. MBC의 위보도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 5.경부터 7.경까지 청와대에 세월호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바. 소결론

1)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기무사는 군 첨보 및 군 관련 첨보만을 취급하여야 하고, 이와 무관한 첨보를 수집·작성·처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이재수를 비롯하여 피고소인 김대열, 지영관, 소강원, 김병철 등은 공모하여 세월호 사건 직후 처·실장 회의나 간담회 등 각종 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여 통수권을 보좌하고, 세월호 참사 현장에 군의 인적·물적 장비가 대규모로 투입되었으니 군 관련 첨보를 수집한다는 권한에 가탁하여, 세월호 유가족들의 인적 사항, 성향, 정당 가입 여부 등을 파악한 다음 보수세력들 중 오피니언리더·전문가들의 언론기고로 유가족들의 언행이나 구조작업 장기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유가족들을 압박함으로써 구조작업 종결을 이끌어내는 등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의 지지율 회복에 필요한 각종 제안을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2014. 6. 4.자 지방선거, 세월호 국정조사, 2014. 7. 30.자 재·보궐선거 등에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을 전환시켜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지원하고, 이를 피고소인 박근혜,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한민구 등에게 보고하여 이들의 지휘·감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 위와 같이,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이들의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침해하고, 가족대책위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사실로 나아갔습니다.

4. 죄책

가. 개인정보보호법(민감정보처리제한)위반의 점

1) 관련 법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되고,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합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바513 결정 등 참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같은 법 제71조 제1호는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이하 ‘민감정보’라고 합니다)를 처리, 즉 수집·생성·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검색·출력·이용·제공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민감정보의 처리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 피고소인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여 이들의 민감정보를 위법하게 처리함

이재수 당시 기무사령관은 피고소인들과 공모하여 기무사 내에 피고소인 김대열을 단장으로 ‘세월호 관련 TF’를 설치하여 소속 기무부대원들에게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첩보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시한바, 진도 팽목항 지역을 담당하는 예하 601 기무부대(부대장: 피고소인 소강원),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안산 지역을 담당하는 예하 301 기무부대(부대장: 피고소인 김병철) 등을 동원하여 세월호 유가족들의 분위기, 소란행위 등 특이 언동, 무리한 요구사항, 사생활, 성향, 인적사항, 정당 가입 여부,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요구사항 파악 등 광범위한 첩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기무부대 정보보안반원 등은 실종자 가족 관련 온라인상 공개정보를 확인하여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네이버 넉네임, 학력, 거주지, 이메일 및 개인블로그 주소, 네이버 활동 내역, 인터넷 물품 구매내역, 주민등록증, 통장 사진 등 온라인상 사찰첩보를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 지영관이 장으로 있던 정보융합실 소속 부대원들은 피고소인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의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반응, 관심사항 등을 파악하였고, 이와 같이 수집된 정보를 취합하여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첩보활동의 방향성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증 제1 내지 3호증 참조).

또한 이들은 위와 같은 첩보를 문건으로 정리하여 청와대 관계자들(피고소인 박근혜, 김기춘,김장수, 김관진, 한민구)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지휘·감독을 받았습니다(증 제8호증 참조).

위와 같이, 피고소인들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2014. 4.경부터 2014. 10.경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여 이들의 성명과 직업, 소속, 정치적 성향, 정당의 가입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 기록, 저장, 이용, 제공 등의 행위를 한바, 이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인격주체성을 특정짓고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일 뿐 아니라, 특히 이들의 정치적 성향, 정당의 가입 여부 등은 개인의 인격에 밀접히 연관된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의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그 처리가 엄격하게 제한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나. 형법상 업무방해의 점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족(피해자)대책위의 업무를 방해함

1) 피고소인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을 통해 ‘진도 지역 실종자 가족들의 경우 가족들을 위한 구강청결제 대신 죽염을 요구하였다’, ‘자녀의 생일에 따른 미역국 등 지원 요구’, ‘대입 특례 요청’, ‘유가족 대표는 평범한 직업 출신이나 성향은 사회비판적임’, ‘유가족 위원장, 대변인은 정의당 출신으로 인터넷 자료 참고’, ‘유가족 중 일부가 야간에 음주하였다’ 등의 동향을 사찰하였는바(증 제1 내지 3호증 참조), 이 중 일부는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다른 일부는 개인정보(민감정보)에 해당함에도 피고소인들은 이를 제한없이 수집하였고, 일부는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기 위하여 유포되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2) 또한 피고소인들은 안산지역 단원고 선·후배, 지역 주민들의 촛불시위 등을 ‘반체제 징후’로 보고, 종북세력이 세월호 피해자 대책위와 연계하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000만명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바, 이를 대정부 총공세로 판단하여, 보수 세(력) 결집을 통한 조직적 맞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바(증 제1, 5, 6, 7호증 참조), 이에 세월호 추모집회 등 ‘좌파’ 및 진보단체들의 집회·시위 첩보를 수집하여 보수 세력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추모집회 등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를 넘어 직무의 행사에 가탁한 부당한 행위를 한바, 이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함

피고소인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고, 피고소인 김기춘은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대통령비서

실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피고소인 김장수는 국가안보실장으로서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고, 피고소인 김관진은 국방부장관으로서는 소속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국가안보실장으로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할 권한이 각 존재하였으며, 피고소인 한민구 또한 국방부장관으로서 소속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 범행이 지속된 2014. 4.경부터 10.경까지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등을 역임한 자들입니다.

피고소인들은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넘는 첨보활동을 지시·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이재수를 비롯하여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세월호 사건 직후 쳐·실장 회의나 간담회 등 각종 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여 통수권을 보좌하고, 세월호 참사 현장에 군의 인적·물적 장비가 대규모로 투입되었으니 군 관련 첨보를 수집한다는 권한에 가탁하여,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의 활동을 종북세력의 준동으로 평가하여 집회 등 정보를 보수세력에게 제공하여 맞불집회를 하게 하는 등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할 권리를 방해하는 데까지 나아간바, 이는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를 넘어 직무의 행사에 가탁한 부당한 행위로써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2) 세월호 유가족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함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참사의 피해자로서 참사가 발생한 당시 구조, 진상규명 및 실종자 수습 등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가 있는 자들임에도, 피고소인들은 순차 공모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을 사찰하고 이러한 첨보를 토대로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에게 추모집회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맞불집회를 하게 하는 등 이들이 정부 또는 한국사회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방해한바,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의율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5. 소결

가. 조셉 카나타치 UN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지난 7월 한국에 방문하여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의 일환으로 한국의 프라이버시 실태를 조사한 성명(statement)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점{ “국군기무사령부는 정당한 근거 없이 세월호 유가족을 종북 세력으로 낙인 찍어 불법적으로 (온라인쇼핑 기록 등)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가족을 미행하거나, 유가족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사찰하기도 했습니다.” }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면서, 유가족이 당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남김없이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 행위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것입니다(증 제9호증 Statement to the media by the United Natio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 on the conclusion of his official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15-26 July 2019 중 22항 참조).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의 성명 중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관련 부분]

22) 방한 중 목격한 사례 중 가장 눈을 뗄 수 없었던 사례는 304명의 사상자와 5명의 실종자를 남긴,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이었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의 유가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법원에서 이 사고는 세월호 소유주와 당국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세월호 선장은 중과실로 3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유가족이 진상조사와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서로 모이기 시작하자 정부는 이들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도록 극심한 방해를 하였으며, (국방부 직할) 국군기무사령부는 유가족에 대한 사찰을 감행했습니다. 세월호 사태를 비롯한 여러 사안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근본적 개혁, 재편은 물론 국내 감시사찰기능 폐지 등의 노력을 전개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보면 국군기무사령부는 정당한 근거 없이 세월호 유가족을 종북 세력으로 낙인 찍어 불법적으로 (온라인쇼핑 기록 등)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가족을 미행하거나, 유가족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사찰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 중 한 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국가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재난의 희생자가 또다시 불법적인 국가의 사찰과 괴롭힘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위로를 받고, 보호받고, 국가의 배상을 받아 마땅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나라의 적으로 몰렸습니다. 유가족이 당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남김없이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II. 관련사건 판결문 내용

-소강원, 김병철, 기우진

1.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30 판결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가. 요지

-징역 1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세월호 참사 당시 610기무부대장이었던 피고인이 군 관련 첨보의 수집을 명할 수 있는 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해 그 휘하의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지시는 국군기무사령부령이 정한 기무사령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부대원이나 기무사령부 지휘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판결문 기재 범죄사실

나. 2014. 5. 9.경 '유가족 분위기' 파악 범행 관련

위 가.항의 모의에 따라 세월호 TF 지휘부는 2014. 5. 9.경 희생자 유가족의 분위기를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세월호 TF 소속 AC는 같은 날 C사령부 본부와 예하 X부대 부대원들에게 YM망 이메일, TIS,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진도 팽목항, 진도 실내체육관 등지에서 특정 조치에 대한 불만, 과격 행태 등을 보이는 세월호 유가족의 가족관계와 특이내용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에 더하여 제H부대 부대원에 대하여 군 관련 첨보수집을 지시할 권한을 보유한 제H부대 부대장인 피고인의 관련 임무 부여 등 지시에 따라, 동 부대 첨보계장 AG는 2014. 5. 9. 제H부대 부대원들에게 팽목항, 진도 실내체육관 등지에서 특정 조치에 대한 불만, 과격 등을 보이는 세월호 유가족의 가족관계와 특이내용 등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제H부대AD연대반 소속 AE는 "세월호 유가족 동정"이란 제목으로 '일부 유가족이 "결국 언론 플레이 해서 유족들이 폐쓰고 난동 부리고 있다며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게 하려는 것 아니냐?"며 수중수색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시선을 의식했

다'는 내용을 제H부대 상황실로 보고하는 등, 사령부 본부와 제H부대 부대원들은 회생자 유가족의 분위기를 각각 수집·파악하여 보고하였으며, 이와 같이 보고된 상황은 지휘보고계선에 따라 피고인, G, E 등에게 종합되어 보고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G 등과 공모하여, C사령부 제H부대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제H부대원들로 하여금 C사령부의 적법한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가족의 분위기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2014. 5. 20.경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 파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 가.항의 모의에 따라 E, G 등 세월호 TF 지휘부는 2014. 5. 20.경 유가족 관련 사항을 수집·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세월호 TF 소속 AF은 같은 날 C사령부 본부와 예하 X부대 부대원들에게 YM망 이메일, TIS, 전화 등을 이용하여 생일날 미역국 및 케이크 요구, 병원 진료시 가족출입증 발급 등 세월호 유가족의 '파하다 싶은 정도의 무리한 요구'를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에 더하여 제H부대 부대원에 대하여 군 관련 첨보수집을 지시할 권한을 보유한 제H부대 부대장인 피고인의 관련 임무 부여 등 지시에 따라, 동 부대 첨보계장 AG는 2014. 5. 20. 제H부대 부대원들에게 '생일날 미역국 및 케이크 요구, 병원 진료시 가족출입증 발급' 등 세월호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수집·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제H부대 소속 활동관인 AH은 "세월호 관련 과도한 가족 요구사항 확인 결과"라는 제목으로 '전도 지역 실종자 가족들의 경우 가족들을 위한 구강청결제 대신 죽염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을 제H부대 상황실로 보고하는 등, 사령부 본부와 제H부대

부대원들은 희생자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각각 수집·파악하여 보고하였으며, 이와 같이 보고된 상황은 지휘보고계선에 따라 피고인, G, E 등에게 종합되어 보고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G 등과 공모하여, C사령부 제H부대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제H부대원들로 하여금 C사령부의 적법한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2014. 6. 26.경 '유가족 사생활' 파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 가.항의 모의에 따라 E, G 등 세월호 TF 지휘부는 유가족 관련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세월호 TF 소속 AI은 2014. 6. 26. C사령부 본부와 예하 X부대 부대원들에게 Y망 이메일, TIS, 전화 등을 이용하여 최근 유가족의 TV 시청 내용 등 유가족의 사생활을 포함한 진도 실내체육관 동정을 파악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에 더하여 제H부대 부대원에 대하여 군 관련 첨보수집을 지시할 권한을 보유한 제H부대 부대장인 피고인의 관련 임무 부여 등 지시에 따라, 동 부대 첨보계장인 AG는 2014. 6. 26. 제H부대 부대원들에게 '진도 실내체육관 내 잔류 유가족 현황, TV 시청 내용, 야간 음주 실태, 신경질을 내는 사례' 등의 첨보를 수집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제H부대 소속 활동관인 AE는 유가족 일부가 야간에 음주를 하였다고 제H부대 상황실로 보고하는 등, 사령부 본부와 제H부대원들은 유가족 개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각각 수집하여 보고하였으며, 이와 같이 보고된 상황은 지휘보고계선에 따라 피고인, G, E 등에게 종합되어 보고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G 등과 공모하여, C사령부 제H부대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제H부대원들로 하여금 C사령부의 적법한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가족의 사생활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

마. 2014. 7. 6.경 '유가족 성향' 파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 가.항의 모의에 따라 B는 청와대 비서·안보·경호실장에 대한 세월호 관련 주요 현안 보고 다음날인 2014. 7. 6. C사령부 본부 5층 기밀회의실에서 D, E 등 C사령부 내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직 실종자 학부모의 성향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작할 사항' 등의 표현과 함께 회의 참석자들을 질책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성향, 영향력, 상태, 각각의 활동을 분석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D은 B의 지시사항을 강조하면서 위험성은 알고 있으나 유가족 성향 파악 등 부대원들의 활동을 기술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E는 G를 포함한 C사령부 본부와 예하 X부대 부대원들에게 Y망 이메일, TIS, 전화 등을 이용하여 유가족의 직업, 성격, 활동내용, 언동사항 등 수집에 의한 성향 파악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에 더하여 제H부대 부대원에 대하여 군 관련 첨보수집을 지시할 권한을 보유한 제H부대 부대장인 피고인의 관련 임무 부여 등 지시에 따라, 제H부대 첨보계장 AG는 같은 날 제H부대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이름 등을 전달하며 유가족의 직업, 성격, 활동내용, 언동사항 등 수집에 의한 성향 파악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제H부대 소속 활동관인 AE 등은 유가족 개개인의 성향을 '강성', '중도', '온건' 등으로 분류하여 피고인에게 문자로 보고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사령부 본부에 설치된 세월호 TF 현장지원팀에 보고하는 등, 사령부 본부와 제H부대 부대원

들은 현장 정보 수집 활동, 인터넷 검색 등을 이용하여 유가족의 성향 정보를 각각 수집하여 보고하였으며, 이와 같이 보고된 사항은 지휘보고계선에 따라 피고인, G, E 등에게 보고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G 등과 공모하여, C사령부 제H부대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제H부대원들로 하여금 C사령부의 적법한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31 판결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

가. 요지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재판부는 소 전 참모장의 지시를 받고 유가족을 사찰한 김병철 전 준장에 대해서는 “소 준장의 지시로 유가족을 사찰했으나, 김 전 준장 역시 참모장의 지시를 받아 유가족 사찰 행위를 지시한 점, 부대원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판결문 기재 범죄사실

나. 2014. 5. 9.경 '유가족 분위기 파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 가.항과 같은 모의에 따라 E, G는 2014. 5. 7.경 세월호 TF 소속 AH, AI에게 예하 CG부대 부대원들을 통하여 희생자 유가족의 분위기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AI는 제H·AD부대 첨보계장 AE, AJ에게 CF망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유가족의 여망, 불만, 과격 등과 같은 희생자 유가족 분위기, 안산 지역 유가족 침묵시위 동정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에 더하여 제H부대 부대원에 대하여 군 관련 첨보수집을 지시할 권한을 보유한 부대장인 피고인의 관련 임무 부여 등 지시에 따라, 제H부대 첨보계장 AE은 2014. 5. 9.경 동 부대 활동관 AF에게 희생자 유가족 분위기와 안산 지역 유가족 침묵시위 동정 등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세월호 TF 및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F가 관찰 또는 현장 지원공무원 및 관계자 등

으로부터 들어서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이하 '득문'이라 한다)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첨보를 수집하여 이를 AE 등에게 보고하면, AE은 기존에 수집한 첨보에다가 위 첨보를 추가한 뒤, 2014. 5. 11. '합동분향소 앞에서 피켓시위 및 서명운동을 지속 전개중으로 마스크를 쓰고 피켓을 들고 있고 조문객이 많은 시간과 적은 시간 피켓 시위 인원수가 다르다'와 같이 유가족 분위기와 안산 지역 유가족 침묵시위 동정을 정리하여 AI, AK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와 같이 보고된 내용은 보고 계선에 따라 피고인, G, E 등에게 종합되어 보고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G 등과 공모하여 제H부대 부대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제H부대 부대원들로 하여금 C사령부의 적법한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가족 분위기 등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2014. 5. 20.경 '유가족 요구 과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 가.항과 같은 모의에 따라 E, G는 2014. 5. 20.경 세월호 TF 소속 AH, AL 등에게 예하 CG부대 부대원들을 통하여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AL은 제H·AD부대 첨보계장 AE, AJ에게 CF망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생일날 미역국 및 케이크 요구, 병원 진료 시 가족출입증 발급 등 세월호 유가족의 '과하다 싶은 정도의 무리한 요구'를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에 더하여 제H부대 부대원에 대하여 군 관련 첨보수집을 지시할 권한을 보유한 부대장인 피고인의 관련 임무 부여 등 지시에 따라, 제H부대 첨보계장 AE은 2014. 5. 20.경 동 부대 활동관 AF에게 CF망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생일날 미역국 및 케이크 요구, 병원 진료시 가족출입증 발급 등 세월호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수집·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세월호 TF 및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E은 AF가 앞서 보고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여 2014. 5. 21. '세월호 관련 유가족들의 요구 실태 파악 보고(H)'라는 제목으로 '교육청, 유가족 요청에 따라 화장장 및 장지까지 리무진으로 조치', '진도로 내려가는 버스와 시위에 필요한 퍼켓까지 요구', '유가족 증명서 등 발급 요구', '자녀 생일에 따른 미역국 등 지원 요구', '대입 특례 요청'이라고 AL에게 보고하는 등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였으며, 이와 같이 보고된 내용은 보고 계선에 따라 피고인, G, E 등에게 종합되어 보고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G 등과 공모하여 제H부대 부대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제H부대 부대원들로 하여금 C사령부의 적법한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2014. 5. 29.경 '안산 가족대책위 대표 및 대변인 파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위 가.항과 같은 모의에 따라 B 등은 2014. 5. 29.경 E 등에게 세월호 유가족 관련 첨보를 수집·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E, G는 2014. 5. 29.경 세월호 TF 소속 AI, AL 등에게 예하 CG부대 부대원들을 통하여 세월호 유가족 대표 및 대변인 관련 정보를 비롯한 안산 가족대책위 관련 정보를 수집·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AI는 CF망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C사령부 본부와 예하 CG부대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대표 및 대변인 관련 정보를 비롯한 안산 가족대책위 관련 정보를 수집·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에 더하여 제H부대 부대원에 대하여 군 관련 첨보수집을 지시할 권한을 보유한 부대장인 피고인의 관련 임무 부여 등 지시에 따라, 제H부대 첨보계장 AE은 2014. 5. 29.경 동 부대 활동관 AF에게 CF망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세월호 유가족 대표 및 대변인 관련 정보를 비롯한 안산 가족대책위 관련 정보를 수집·파악하여 보고 할 것을 지시하였다.

세월호 TF 및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E은 AF가 앞서 보고한 자료에다가 2014. 5. 30. 인터넷 검색 및 득문을 통해 추가적으로 첨보를 수집하여 '세월호 유가족 대표 및 대변인 관련 확인 결과[H]'라는 제목으로 AM과 AN의 사진과 함께 '유가족 대표(AM) 보습학원 운영 경력 및 시흥에서 지게차를 운영하는 등 평범한 직업 출신이나 성향은 사회비판적임', '유가족 대변인(AN) 정의당 출신으로 인터넷 자료 참고'라고 AI에게 보고하는 등 세월호 유가족 대표 및 대변인 관련 정보를 수집·파악하여 보고하였으며, 이와 같이 보고된 내용은 보고 계선에 따라 피고인, G, E 등에게 종합되어 보고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G 등과 공모하여 제H부대 부대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제H부대 부대원들로 하여금 C사령부의 적법한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안산 가족대책위 대표 및 대변인 관련 첨보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마. 2014. 6. 25.경 '단원고 분위기 파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 가.항과 같은 모의에 따라 E, G는 2014. 6. 25.경 세월호 TF 소속 AO 등에게 예하 CG부대 부대원들을 통하여 안산 단원고 및 안산 지역 분위기를 수집·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AO은 제H부대 소속 AE, AF에게 CF망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안산 단원고 및 안산 지역 분위기를 수집·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에 더하여 제H부대 부대원에 대하여 군 관련 첨보수집을 지시할 권한을 보유한 부대장인 피고인의 관련 임무 부여 등 지시에 따라, 제H부대 첨보계장 AE은 2014. 6. 25. 동 부대 활동관 AF에게 CF망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단원고 분위기를 수집·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세월호 TF 및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E은 AF가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서 입수한 자료 및 추가적으로 보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2014. 6. 25. '충성!(H) 세월호 침몰 관련 안산 단원고 애도 분위기(수정)'이라는 제목으로 '희생된 학생들을 잊지 않을 것임. 다만 너무 억지식 애도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 불편함'이라고 보고하는 등 안산 단원고 분위기를 수집·파악하여 보고하였으며, 이와 같이 보고된 내용은 보고 계선에 따라 피고인, G, E 등에게 종합되어 보고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G 등과 공모하여 제H부대 부대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제H부대 부대원들로 하여금 C사령부의 적법한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안산 단원고 분위기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바. 2014. 7.경 '인천 가족대책위 요구사항 파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 가.항과 같은 모의에 따라 사령관 B는 2014. 7. 초순부터 같은 해 7. 중순까지 수회에 걸쳐 E 등에게 인천 가족대책위 요구사항을 비롯한 가족대책위 관련 정보를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E, G는 2014.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 까지 수회에 걸쳐 세월호 TF 소속 AO 등에게 예하 CG부대 부대원들을 통하여 인천 가족대책위 요구사항을 비롯한 가족대책위 관련 정보를 수집·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AO은 2014. 7. 1. 제H부대 소속 AE, AF에게 인천 가족대책위 구

성 현황과 현 주요 관심사, 기타 특이동정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약 3회에 걸쳐 AE 등에게 인천 가족대책위 구성, 인천 합동분향소 분위기, 인천 가족대책위 요구사항 등을 수집·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에 더하여 제H부대 부대원에 대하여 군 관련 첨보수집을 지시할 권한을 보유한 부대장인 피고인의 관련 임무 부여 등 지시에 따라, 제H부대 첨보계장인 AE은 2014. 7. 초순부터 같은 해 7. 중순까지 수회에 걸쳐 동 부대 활동관인 AF에게 CF망이 메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인천 가족대책위 구성, 인천 합동분향소 분위기, 인천 가족대책위 요구사항을 수집·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세월호 TF 및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E은 AF가 앞서 보고했던 자료 및 드문 등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보고한 첨보를 바탕으로 하여 2014. 7. 1. '충성! 가족대책위 구성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일반인 희생자 36명 중 22명 참여, 대책위원장 AP(인천시민) 분향소 변경(인천시청 앞 미래광장 /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회의 분파위가 아닌 별도 위원회로 구성된 성격임'이라고 AO에게 보고하였고, 2014. 7. 9.에는 '충성!(H) 인천 합동분향소 분위기 파악 보고'라는 제목으로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 뒤늦게 구성, 보상 위주 활동 중', '안산 지역 가족대책위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속 제기하며 보상 위주의 정부에 지속 건의'라고 AO에게 보고하였으며, 2014. 7. 6.에는 '충성!(H) 가족대책위 요구사항 확인 결과 보고'라는 제목으로 '인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안산과 동일 수준 지원 요구'라고 AO에게 보고하는 등, 인천 합동분향소 분위기를 수집·파악하여 보고하였으며, 이와 같이 보고된 내용은 보고 계선에 따라 피고인, G, E 등에게 종합되어 보고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G 등과 공모하여 제H부대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제H부대원들로 하여금 C사령부의 적법한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천 가족대책위 구성, 인천 합동분향소 분위기, 인천 가족대책위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사. 소결

이처럼 위 가.항과 같은 모의에 따라 B, D, E, G 등은 2014. 4. 16.경부터 지속적으로 C사령부 소속 AI, AO, AL 등에게 예하 CG부대 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첩보를 수집·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러한 지시에 더하여 제H부대 부대원들에 대하여 군 관련 첩보수집을 지시할 권한을 보유한 동 부대 부대장인 피고인의 관련 임무 부여 등 지시에 따라 제H부대 첩보계장 AE, 활동관 AF 등은 2014. 4. 17.경부터 2014. 7. 16.경까지 위 나.항, 다.항, 라.항, 마.항, 바.항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산 화랑유원지 등지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 등 사찰 첩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정기·수시 보고하였으며, 이와 같이 보고된 내용은 보고 계선에 따라 피고인, G, E, D, B 등에게 보고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C사령부 제H부대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제H부대원들로 하여금 2014. 4. 17.경부터 2014. 7. 16.경까지 C사령부의 적법한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 첩보를 수집·파악하게 하고, 그 파악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35 판결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

가. 요지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나. 판결문 기재 범죄사실

3. 구체적인 범죄 사실

가. S부대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D, E, H, L, R 및 일부 ~~S~~부대원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지 않은 채 2014. 6. 13.경부터 2014.

7. 12.경까지 G 조력자들의 무선전기통신 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기동방탐차량을 사용하여 민간인들 사이에 송·수신되는 무선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2.경 E, H와 함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지 않은 채 S부대원 및 기동방탐장비를 안성시 소재 금수원 인근에 투입하여 민간인들 간에 송·수신되는 무선전기통신 내용을 감청하고 G 조력자들이 사용하는 무선전기통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여 G 검거와 관련된 첩보를 수집하기로 논의하고, 피고인과 H는 S부대장 R에게 '기동방탐장비를 투입하면 감청이 가능한지 및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명목으로 투입하면 되는지'에 관하여 검토하고 출동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해당 지시를 받은 R은 M장 L에게 위 지시 사항을 보고하고 관련 검토 및 출동에 관한 L의 승인 및 지시를 받은 뒤 S부대 소령 W 등에게 위 사항들에 관한 검토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였고, 이와 별개로 피고인과 H는 F처 TF원에게도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였다. 그 결과 F처 TF원은 '기동방탐장비를 투입하여 감청이 가능, 전파환경조사·기동방탐훈련 위장下 경기 안성 소재 금수원 인근 지역에서 시험 운용' 등을 내용

으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고¹⁾,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과 E은 S부대 강화반원들 및 기동방탐장비를 금수원 인근에 투입하여 전파환경조사라는 위장 명분하에 감청활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날인 2014. 6. 13. 오전에 위 B에게 기동방탐장비 투입 건의 보고를 하였다.

그 뒤 같은 날 피고인과 H는 R에게 출동 지시를 내렸고, R은 W에게 출동 지시를 내렸으며 이 지시를 받은 W 및 강화반원 상사 X, 상사 Y 등은 같은 날 13:35경 금수원 인근 지역으로 출동하여 기동방탐차량을 전개시키고 같은 날 자정 무렵부터 감청활동을 개시하였다. 강화반원들에게 지시된 사항은 입감되는 무선 전기통신 내용을 감청 및 채록하고 G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고하라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지시 사항에 따라 강화반원들은 대북 방첩이나 군 보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목적 제한을 하지 않고 장비에 특정한 주파수 제한을 걸지 않은 채 장비에 입감되는 무선전기통신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채록하였다. X, Y 등이 교대로 기동방탐장비에 입감되는 내용을 감청하고 채록하여 W에게 보고하였고, W은 해당 내용을 S부대 운용과에 보고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사령부 F처 TF에 보고하였다. S부대 운용과에서는 채록문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C망 메일을 통해 F처 TF 소속 Z, AA 등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감청 활동 결과를 F처 TF에 보고하였다.

S부대 강화반은 2014. 7. 12.경까지 기동방탐장비를 사용하여 무선전기통신 감청을 계속하여 경찰망, 소방망, 일반 사인 간 무선전기통신 및 금수원 내에서 이루어진 무선전기통신 등 총 1,301건의 교신 내용을 청취하고 채록한 뒤 S부대 운용과에 보고하였

고 S부대 운용과원들은 채록문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F처 TF에 보고하였다. F처 TF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지시 아래 '일일보고'를 작성하여 B, D에게 각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H, L, R 및 일부 S부대원들과 공모하여 법령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나. P부대 관련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D, E, H, L, O 및 일부 P부대원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지 않은 채 2014. 6. 28.경부터 2014. 7. 22.경까지 사이에 순천 봉화산, 용인 석성산, 부산 장산, 서울 북악산, 성남 청계산, 하남 검단산, 대구 최정산, 영천 보현산, 기흥, 웨관, 칠곡, 양평, 홍천 일원에서 G 조력자들이 사용하는 무선전기통신 내용 확인을 목적으로 작전통신보안장비를 사용하여 민간인들 사이에 송·수신되는 무선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위 '가.'항과 같이 S부대의 감청활동이 계속되고 있던 중 피고인은 B, E, H 등과 함께 G 은신처 또는 밀항 가능 지역으로 추정되는 순천 봉화산, 용인 석성산, 부산 장산 일원에서 추가적인 감청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P부대원 및 P부대에서 운용하는 작전통신보안장비를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부대장 O에게 투입 지시를 내렸고, O은 위 지시에 관해 L에게 보고하고 L로부터 활동 승인 및 출동 지시를 받은 뒤 P부대원들에게 사령부에서 정해준 위 각 장소에 감청장비와 인력을 전개하여 G 관련 침보 수집 목적의 감청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P부대원들은 2014. 6. 28.경 현

장에 출동하여 민간인들 간에 송·수신 중인 무선전기통신 내용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채록하였다. 2014. 6. 30.경 서울 북악산, 성남 청계산, 하남 검단산, 대구 죄정산에, 2014. 7. 4.경 영천 보현산에, 2014. 7. 7.경 기흥에, 2014. 7. 9.경 왜관에, 2014. 7. 10. 칠곡과 양평에, 2014. 7. 14.경 홍천에 P부대원들 및 작전통신보안장비가 각 투입되었고 현장에 투입된 위 부대원들은 민간인들 간에 송·수신 중인 무선전기통신 내용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채록하였다.

현장에서 감청 활동을 한 위 부대원들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선 전기통신을 감청한 뒤 채록 내용을 P부대 운용과에 보고하였고 P부대 운용과에서는 일일 감청 전수 및 채록문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C망 메일을 통해 F처 TF에 보고하였으며, F처 TF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지시 아래 '일일보고'를 작성하여 B, D에게 각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H, L, O 및 일부 P부대원들과 공모하여 법령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4. 무죄부분

-허위공문서작성

은폐 목적으로 계엄 검토 문건을 훈련 비밀로 생산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계엄 검토 문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장 TF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옛 ‘군사보안 업무 훈령’의 내용과 업무상 관행에 비춰 가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검찰은 “당시 내란음모가 핵심이었고 이를 위해 피고인들이 위장 TF를 운영한 자체가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계엄 검토 문건 등과 관련해 항소했습니다. 위 피고인들 전원도 항소했습니다.

국가기관의 사찰행위 금지 강화를 위한 대책(현행법과 대체입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월호 참사 대응 TF팀장

이정일 변호사

1. 국가기관의 사찰행위와 인권침해의 영역

가. 민간인 사찰 주체와 방식

(1) 민간인 사찰 주체(기관)

사찰(查察)의 사전적 정의는 ‘남의 행동을 몰래 엿보아 살피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찰은 점검(點檢) 또는 조사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그 자체는 불편·부당성을 내포하지는 않는다.

공권력에 의한 점검(點檢) 또는 조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선량한 민간인을 향해 있는 경우를 소위 민간인 사찰이라고 말한다.

민간인 사찰은 국가권력이 법률적 근거가 없이 또는 그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활용함으로써 개인이 헌법상 보장받은 사생활의 권리,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나아가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평가된다.

개인에 관한 정보·수집 활동의 주요 기관은 경찰, 국가정보원, 대검찰청(범죄정보기획관의 범죄 정보 수집업무), 국방부 장관 소속의 군 관련 첩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국군기무사령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공무원의 비위 감찰과 관련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소속으로 공무원의 비위 감찰과 관련한 민정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공무원의 비위 감찰과 관련한 감사원 등이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 되었고, 사찰 금지 대상의 주체로 논란이 계속되어 핵심 통제의 대상이 되었던 기관은 경찰(정보과),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이었다.

여기에서는 주로 경찰(정보과),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의 활동과 관련한 민간인 사찰의 금지 대책으로써 언급하고자 한다.

(2) 민간인 사찰의 방식

민간인 사찰의 방식은 다양하다. 감시 수단이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 사찰의 방식도 발전하였다. 따라서, 국가 정보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을 통제하기 위한 방식도 매우 복잡하게 되었다. 따라서, 민간인 사찰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법률의 제정도 쉽지 않고, 법관의 영장에 의한 통제방법도 쉽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인 사찰에 관한 통제방식은 적법절차의 준수와 사후통제와 감독의 문제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민간인 사찰은 철저한 감시활동으로 시작된다. 현장에서 발언, 동향 정보수집과 도청은 물론이고 전화 감청, 우편물 검열, 사진 촬영과 주거와 건조물·자동차 수색 같은 물리적 방법을 총동원하여 개인 또는 단체·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기술발전에 따라 폐쇄회로 TV에 의한 감시, 통신 도청과 감청, 소형 녹음기를 이용 한 녹음도청, 범 지구 위성항법 시스템(GPS) 추적, 인터넷과 컴퓨터 검색 등이 있고, 심지어 하늘에서의 감시의 눈인 정찰위성과 정찰항공에 의한 감시도 이루어진다.

특히, 정보기관이 많이 활용하는 통신감청으로서 전자적 감시활동¹⁾이다. 이는 대

1) 전자감시 활동 중에서 펜-레지스터와 제3자 거래기록 데이터 마이닝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어 치열한 법적 논쟁이 있다. 펜-레지스터(Pen Registers)는 통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화의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사실을 인식하는 통신과 통화에 대한 감지장치를 말한다. 제3자 거래기록(Third party records)은 사회생활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서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일방당사자가 계약에 기하든지, 아니면 단독행위에 의한 사실상의 기록과 관리에 의해 가지고 있든지 특정인 등에 대한 거래내용과 어떤 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서류나 장부 등을 의미한다.

상물에 대한 시각적·청각적 모든 요소를 제한 없이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과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광범위성에 있다.

위와 같이 감시활동에 의해 입수된 정보는 정보 수집기관이 목적으로 하는 후속 공작 활동의 기초가 된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목적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적 단체에 대한 활동저지²⁾ 또는 와해(조직 붕괴), 정치사찰³⁾, 범죄자료, 감찰 등이다.

국군기무사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은 부대원이 진도 평목항과 체육관, 안산 합동분양소 등에서 들어서 얻는 정보를 얻어첩보자료로 보고하거나, 유가족 분위기와 안산 지역 유가족 침묵시위 동정을 정리하여 종합보고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유가족의 진료기록, 정치적 성향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거나, 시위 현장 등에서 유가족의 요구와 발언 등을 정리하여 보고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유병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안성시에 있는 금수원 인근에서 법관에 의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받지 않고 무선전기 통신 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민간인 사이에 송·수신되는 무선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위와 같이 국군기무사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이하 ‘피해자’라고 한다)하게 된 이유는 세월호 참사 후 해경이 초동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희생자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확산·고조되었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집회·시위가 개최되는 등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전개되었는데, 2014. 6. 4. 예정된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막고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였다.

특히, 국군기무사사령부의 사찰 내용에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반정부선동으로 평가,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종북세력 또는 불순

2) 사찰의 결과 드러난 특정인에 대한 약점을 근거로 영향력 있는 지위에서 상실시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꼭두각시들로 그 자리를 채운 뒤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억압하고 여론을 왜곡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데 이용된다.

3) 통상 새로 집권한 세력이 정책을 비롯한 경쟁 세력을 탄압하고 세력 확장을 저지할 목적으로 법적, 도덕적, 종교적, 윤리적으로 불리한 약점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세력의 활동으로 펼쳐, 학부모 단수가 반월공단 노동자로 보상금을 충분히 지급하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거나 세월호 유가족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무리한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상당수 기재 되었다. 이러한 사찰 내용은 대통령이 순수한 유가족과 그렇지 않은 유가족으로 갈라치기 언론 보도자료로 활용되었다.

나.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찰이 갖는 인권침해의 내용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의 사찰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 자기 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자율적인 정보통제권의 침해, 통신의 비밀 침해, 양심의 자유 침해, 언론·출판 자유의 침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너무 법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의 사찰이 갖는 인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는 사회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는 정서적 불안과 심리적 공포를 유발하여 정상의 상태로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한 개인의 일상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의 목적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를 반정부선동 또는 순수한 유가족과 그렇지 않은 유가족으로 갈라치기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었다.

즉,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의 결과로서 수집된 정보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 반정부선동으로, ‘순수한 유가족과 그렇지 않은 유가족’ 으로, ‘세월호 유가족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집단’ 으로 왜곡되는 여론 조성에 활용되어 ‘세월호 유가족’ 을 사회공동체의 일반인과 구별시키는 낙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결과로 세월호 유가족은 재난 참사로 고통을 당한 당사자로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 등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검열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는 상황에서 세월호 유가족은 지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찾기

어렵고, 삶의 의미도 점차 잃어가기 쉽다.

위와 같은 측면에서 국가기관의 사찰은 정보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저지르는 단순한 범률 위반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가 되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공동체를 파괴하는 조직적인 범죄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2. 국가기관 사찰행위의 특성과 현행법상의 처벌 동향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찰은 점검(點檢) 또는 조사(감찰)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그 자체는 불편·부당성을 내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합법적 감찰 또는 조사와 불법적 사찰을 구분하는 원칙적인 기준은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지에 따라 판가름 난다. 법령상의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불법적 사찰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불법적 사찰의 판단 기준은 사찰에서 사용된 방법보다는 의도된 목적(目的)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는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 불법적 사찰⁴⁾이라고 평가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논의하는 것이고, 특히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로 드러나는 현행법상 처벌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가. 국가기관의 사찰행위에 적용되는 형벌법규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은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 의무' 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고, 형벌법규는 형법상으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⁵⁾ 또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이다.

4)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 법관의 영장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사찰 등의 정보수집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불법적 사찰이 될 것이다.
5) 국가정보원의 원장, 차장 및 기타 직원이 그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되고, 미수범도 처벌된다는 점에서 형법과도 다르다.

국가정보원법 제19조(직권남용죄)

-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정원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수진,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 접견·수진, 변호인의 의뢰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1년 이

민간인의 민감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⁶⁾를 적용할 여지는 있으나, 국가정보원 또는 국군기무사사령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⁷⁾”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가정보원의 원장, 차장 및 기타 직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정치관여죄로 처벌(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18조⁸⁾)되지만, 국가정보원법이 민간인 사찰행위에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군인이 정치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정치관여죄로 처벌(군형법 제94조⁹⁾)되지만, 군 관련 법률(국군조직법, 군사법원법, 군형법)이 민간인 사찰행위에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행위와 관련하여 특히 그 권한 남용이 문제 되는 정보수집기관으로서 불법적 민간인 사찰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이에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6)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2020.2.4] [[시행일 2020.8.5.]]

(중략)

3. 제23조제1항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중략)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8) 국가정보원법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4.1.14]

9) 군형법 제94조(정치 관여)

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규정을 국가정보원과 군 관련 법률(국군조직법, 군사법원법, 군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행위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데도 형법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만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나. 국가기관의 사찰행위 특성

(1) 은밀한 사찰행위와 사찰 혼적의 은폐

국가정보원 또는 국군기무사령부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인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탐문채집 등의 방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행위는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불법적인 사찰행위가 발각된 경우에 그 행위의 혼적은 합법적인 것으로 가장·은폐되고, 시간을 벌면서 자료를 폐기하는 방법으로 그 증거를 없애는 것이 특징이다.

(2)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사찰

국군기무사령부의 옛 명칭인 국군 보안사령부의 ‘청명 계획’¹⁰⁾, 2002년 10월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원이 전화 도청한 내역을 담고 있다”며 A4용지 25장 분량의 자료를 공개하면서 여야 간 고소·고발과 참여연대 등의 고발 등이 잇따르면서 불거졌던 국가정보원의 도청사건, 고 김영한 업무일지를 통하여 유신 독재정권에서 공작정치를 담당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도하는 수석회의에서 국정원과 경찰 등을 동원한 사찰과 정치적 비판자나 반대자에게 검찰수사, 세무조사, 정부 지원 차단, 공연이나 전시(展示) 배제 등의 보복적 공작 사건 등에서 공통된 점은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행위가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사찰이었다는 것이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행위도 수개월 간 조직적이고 반

10) 청명계획은 1989년 3월 보안사령부가 친위쿠데타를 성공시키는 데 방해가 될 만한 반정부인사 목록을 만들고 이들을 개별적으로 사찰해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D-데이 전후로 전원 검거한다는 예비검속 작전명을 말한다. 당시 보안사 3처는 1989년 4월 계엄에 대비해 각계 주요 인사 923명의 인적사항·예상 도주로·예상 은신처·체포 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명카드를 작성하고 계엄 시 이들을 검거·처벌하기 위한 청명계획을 수립했다.

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판결로 밝혀졌다(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31 판결, 제 56쪽).

(3) 고소·고발의 어려움과 상당한 기간의 경과 후 드러나는 특성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사찰행위가 진행되었는데도 은밀한 사찰행위라서 고소·고발이 어렵고,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사찰 흔적의 은폐되거나 인멸된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행위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수사 의지가 없는 한 고소·고발되더라도 무혐의 처분이 일반적이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행위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데도 형법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만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더하여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하기 어려운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 조직적 범죄, 행위의 가별성(중대한 불법)에 비하여 가벼운 형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기관의 사찰은 사회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는 정서적 불안과 심리적 공포를 유발하여 정상의 상태로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한 개인의 일상을 무너뜨린다는 인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를 가져온다.

그런데도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행위에 대하여 형법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¹¹⁾)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에 가벼운 형량¹²⁾이 선고된다.

(5) 형법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¹³⁾)가 적용됨으로써 드러나

11)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12) 세월호 사건(특별조사위원회,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법원(군사법원 포함)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선고된 형량은 대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최근 국군기무사령부 제00부대 부대장이었던 소00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유일할 정도이다.

13)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지 않는 피해자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행위의 피해자는 사찰을 당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¹⁴⁾)가 적용됨으로써 피해자가 권리행사를 방해받는 정보기관의 하위직에 있으면서 사찰을 실행하는 자라는 오해를 일으킨다.

정보기관의 하위직에 있는 직원도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처벌되어야 하는데도 처벌되지 않는 상황이 되고, 그 결과가 이들이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왜곡된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행위의 피해자가 사법 불신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3. 국가기관의 사찰행위 금지를 위한 방안

가. 일반론

KB 한마음 대표 김종익에 대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을 계기로 2012. 5월경 국회 차원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근절 TF팀’을 구성하여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안’에 대한 논의¹⁵⁾를 한 적이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안’의 입법 목적을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인권을 보호함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안’에 대한 논의는 말 그대로 정치적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더라도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가 현실적이고 절박한 필요성 때문에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14)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15) ① 주체와 객체에 대해서는 수사와 정보기구를 포함 시킬지, 아니면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관실처럼 공직 감찰이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할지, ② 업무 감독과 통제에 대한 논의도 있어서 내부통제수단으로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조사 지시 금지 의무,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조사 지시에 대한 거부 의무, 국가기관 내부의 불법 사찰행위를 인지했을 경우의 고발 의무 등을 법에 담을 필요성에 대한 논의, ③ 외부통제 수단으로는 민간인 불법사찰 행위에 대해서는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서 사실관계의 확인 및 공표, 민간인에 대해 조사 및 정보수집 활동을 했을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내용을 3개월 이내에 통보하는 것과 같은 제도적 장치, ④ 법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민간인 불법사찰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에 대한 도입 등이 논의되었다.

민간인 사찰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로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행위를 계기로 특히,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행위를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가 아닌 형태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사찰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기관의 사찰행위 특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국가기관의 사찰행위는 사회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는 정서적 불안과 심리적 공포를 유발하여 정상의 상태로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한 개인의 일상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나. 국가정보원법에 사찰행위 금지 및 처벌규정 명문화

국가정보원법에는 정치 관여 금지원칙(국가정보원법 제9조)과 직권남용금지 원칙(국가정보원법 제11조)을 선언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행위의 피해자가 사찰을 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에도 국가정보원법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를 가중처벌의 특칙 구조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가 권리행사를 방해받는 정보기관의 하위직에 있으면서 사찰을 실행하는 자라는 오해를 일으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강화하는 데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가정보원법 제9조의 1(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정보원법 제18조의 2(민감정보처리위반)

제9조의 1(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¹⁶⁾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다. 군 관련 법률(국군조직법, 군사법원법, 군형법)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수사권 폐지와 사찰행위 처벌규정 명문화

국군기무사령부의 경우에는 민간인 사찰 등이 문제가 되어 2018년 9월 1일부로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었다. 그러나, 편의상 국군기무사령부로 칭하기로 한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¹⁷⁾된 적이 있다.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2018. 9. 1.)하여 불법 정보활동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방첩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수사권 배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군사법원법」 개정이 선행¹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개정이 힘을 얻고 있지 못하다.

다만, 군인이 정치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정치관여죄로 처벌(군형법 제94조)되지만, 군 관련 법률(국군조직법, 군사법원법, 군형법)에는 국가정보원법과 같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6)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17) ①발의자 : 김병기 의원 등 10인, ②발의일 : 2018. 8. 28. ③ 회부일 : 2018. 8. 29.

18) 군사법원법 제43조, 제44조는 군사법경찰관을 같은 법 제43조 제1호의 현병부대 소속 군사법경찰관(이하 ‘현병 수사관’이라 함)과 제2호의 기무부대소속 군사법경찰관(이하 ‘기무수사관’이라 함)으로 구분하여 국군기무사령부의 수사관에게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임

국군기무사사령부의 민간인 사찰행위와 관련하여 특히 그 권한 남용이 문제 되는 정보수집기관으로서 불법적 민간인 사찰행위를 처벌하는 국가정보원법과 같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규정을 두고, 나아가 국군기무사사령부가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의 민감정보 처리 행위의 처벌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이기만 하면 개인이든 국가기관이든 개인의 민감정보를 처리한 행위를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이나 국군기무사사령부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가 예정한 것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등이 개인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었는데, 이마다 보니 데 국가정보원이나 국군기무사사령부 등 국가정보기관이 법에 정해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처벌하지 못하는 공백이 생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이나 국군기무사사령부 등이 민간인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사찰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1(국가정보원 등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도 국가정보원의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이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 “라 한다)를 처리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사령관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소속한 군인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4.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더라도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가 현실적이고 절박한 필요성 때문에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행위에 대하여 처벌 법규의 신설 또는 가중처벌로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상상을 초월하는 개인정보 수집의 방법이 나타나고, 검찰·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경우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동태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에 실패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사찰행위 금지 강화 방안으로 적법절차의 준수와 사후통제와 감독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다.

적법절차의 준수와 사후통제와 감독의 문제로서 논의되는 1) 수사와 정보활동이 통합된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경찰의 정보활동에 관한 가이더 라인 제정문제¹⁹⁾, 2) 정보활동의 단계별 세분화, 문서화, 감독규정의 명확화 문제, 3) 경찰 정보활동의 근거법령이 되는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는 치안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이를 개선하는 제도개혁 논의²⁰⁾ 등이 있다.

19) 정보기관의 기본적인 업무처리절차와 한계, 정보요원의 복무규정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규 또는 지침이 없거나 공개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논의되는 영역이다.

20) 경찰은 故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등에 대한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찰청 정보국 내 변호사를 포함한 준법지원팀을 신설, 모든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 확인·감독하고 있으며, 경찰청 감사관실의 정기 사무감사 수감 도입, 경찰위원회 정례보고 등을 통해 정보 경찰 업무에 대한 중첩된 통제 시스템

그러나, 발제자가 우리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에 관한 입법적 통제의 문제점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 않았고, 국군기무사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행위를 계기로 처벌규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의 결과로 국가기관의 사찰행위 금지 강화 방안으로 처벌규정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국가정보원이나 국군기무사사령부가 민간인 사찰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는 취지를 선언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가중처벌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인 사찰행위의 피해자가 사찰 당사자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을 구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여 경찰 정보의 근거 및 활동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경찰공무원법에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는 한편, 법령 경찰청 정 보국의 명칭과 사무, 조직도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 토론회

- 토론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황필규

변호사/기급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사찰의 목적과 최종책임자(지시자)를 밝히는 것이 진상규명입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유경근

1. 정보는 무기입니다. 특히 불법사찰로 수집한 정보는 어느 누구도 그 파괴력을 가늠할 수 없는 끔찍한 무기입니다. 불법사찰은 사찰대상자를 넘어 가족과 이웃은 물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합니다. 불법사찰을 강하게 금지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찰재판에서는 불법사찰 대상자인 피해자는 사라지고 피의자들에게 혐의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시를 받고 사찰을 수행한 이들을 피해자로 봅니다.

법리/판례나 피의자의 권리보다 중요한 것은 사찰피해자의 권리와 회복 그리고 재발방지입니다. 지시를 받았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나 결국 불법적인 사찰지시를 직접 수행했던 자들도 피고인석에 세워 책임을 물어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풍토와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무사의 불법사찰에 협조한 자들과 협조한 내용도 밝혀서 처벌하거나 기록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의 경우 피해자에 근접해 활동한 경찰, 세월호참사 수습/대응 관련 공무원, 자원봉사자 일부 등이 해당됩니다. 만일 기무사가 피해자를 직접 회유하거나 공작을 했다면 이 역시 밝혀서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익제보 또는 내부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의 세밀하고도 강력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유죄를 받은 기무사 지휘관들 역시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항변해왔습니다. 자살한 이재수 사령관의 지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재수가 최종책임자(지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직도 기무사 불법사찰의 최종책임자(지시자)가 누구인지 안 밝히고 있으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찰과 공작의 이유와 배경, 목적 역시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밝히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 것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규명해야 할 진상은 <누가 왜 출항시켰고, 누가 왜 침몰시켰으며, 누가 왜 구하지 않고 죽였는가?>입니다. 모든 진상규명 활동은 이를 밝히

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무사 불법사찰 기소와 재판 역시 ‘사찰의 이유와 목적이 출항/급변침/불구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김기춘과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3. ‘진상규명’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범죄자를 찾아내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후자는 목적으로 전자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간혹, 피해당사자들조차도, 책임자 처벌을 목적으로 삼는 우를 범합니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타협’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검찰 특별수사단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알게 된 것은 ‘수사의 한계’입니다. 특별조사 위원회의 한계가 강제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기소거리만 수사 한다’는 것이 ‘수사의 한계’입니다. 그것도 ‘판례’라는 좁은 틀 안에서.

사회적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가장 큰 요구는 ‘재발방지’입니다. 그래야만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생존자와 유가족이 의미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세월호참사의 경우 청와대, 국정원, 기무사, 국회,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경, 육경, 교육부, 교육청, 단원고, 대한여행사는 물론 청해진해운, 구원파, 선원과 언론 등 세월호참사 당시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기관과 관련자들 그리고 생존교사들까지 모두 수사 또는 조사해야 세월호의 운영/출항부터 급변침과 불구조 그리고 수습과 인양, 진상규명 방해에까지 이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상시독립 국가조사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4. <상시독립국가조사기구>는 사회적 재난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재현하고, 이를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피해자를 지속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은 ‘피해당사자가 진실규명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특조위와 특수단의 공통한계는 피해자들을 진상규명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임)과 ‘전방위적인 조사, 점검, 보완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의 확보’입니다. 검찰은 <상시독립국가조사기구>의 조사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을 가려내 기소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적 재난참사 초래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진상규명의 책임을 제대로 지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5.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민변세월호TF>와 함께 기무사 불법사찰의 피해자는 사찰대상이었던 세월호참사 피해자이며 결국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업무와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현장요원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회적참사특조위> 역시 같은 이유로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습니다. 정곡을 찌르는 고소와 수사요청임에도 불구하고 법리와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는 주장이지만 불법사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전이라고 여기고 함께 해 주신 <민변세월호TF>와 <사회적참사특조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고소와 수사요청이 피고소인들을 직권남용,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월호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기관의 사찰에 관한 토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회

황필규

1. 빌제에 대한 코멘트

(1) 이호영

- 국가기관의 사찰이 ‘민주주의의 파괴’이며 ‘기본권 침해’라는 성격 규정에 동의함.
- 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주요 사례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는 사찰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함.
- 국가기관의 사찰 방지를 위한 ‘권한 축소’와 ‘통제 강화’의 기본방향과 대부분 내용에 동의함.

(2) 류하경

- 기무사, 국방부, 청와대 등 기관의 사찰 관련된 모든 자들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함.
- 기무사의 사찰이 “정권 유지, 강화”라는 목적을 위한 것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국가와 민간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던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집요한 군사작전을 펼치고, 중요한 민간차원의 지원을 배제코자 함으로써 사태를 왜곡장기화시켰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3) 이정일

- 국가기관의 사찰이 개별 인권/기본권의 침해를 넘어 “사회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는 정서적 불안과 심리적 공포를 유발하여 정상의 상채로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한 개인의 일상을 무너뜨린다는 인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를 가져온다.”는 주장에 공감함.

- 국가기관의 사찰행위가 명확히 범죄로 규정되고 실질적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기존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함.

2. 발제에 대한 보완 토론

(1) (세월호 참사) 국가기관 사찰의 의미 및 성격 규정

“군 정보기관이 민간인의 평소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민간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 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 ….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수집되어 상부에 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 등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월호 참사 후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실종자 가족들이 혹시 정부를 비방하는 것은 아닌지,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심을 가지고, 실종자 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보고 … 지시 …,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군인의 사명 내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9. 12. 24. 선고 2018고30 판결)

“만일 특정 정치적 견해나 성향 등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자유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것임에도 국가권력이 그와 반대의 입장에서 오직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입장 등을 부정 또는 배제하려는 의도로 자신의 공적 권한을 행사한다면, 이는 헌법 제7조에서 명시한 공직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정치적 중립성 규범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것이 국민에게 인식되는 순간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실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보충의견,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

- 결코 용납될 수 없고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처벌되어야 할 반인도적 범죄 :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정치적 사유로 집단 또는 집합체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함(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관련자 단 한 명도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되는 국헌 문란 범죄 : 1) 국토를 침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2) 폭동하는 행위는 내란죄를 구성함.¹⁾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형법 제87조).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루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강제실종’에서와 마찬가지로 범죄를 행한 권력자 혹은 그 권한을 이어받은 자 등이 범죄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은폐하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 범죄 : “사람들의 강제실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정치조직에 의하여

1) 오동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직권남용죄와 헌법적 국가범죄 사이에서”,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김기춘 조윤선등 대법원의 파기환송 긴급 토론회: ‘블랙리스트 검증과 실행이 공무원의 의무인가?’』(2020. 2. 5.), pp.19-26 참조.

또는 이들의 허가·지원 또는 둑인을 받아 사람들을 체포·구금 또는 유괴한 후, 그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장기간 배제시키려는 의도 하에 그러한 자유의 박탈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거나 또는 그들의 운명이나 행방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2))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해석 및 적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존재 의의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여 개인(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함으로써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 이 죄는 본래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범죄로 설계된 것이고,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국가에 대한 범죄’ 라기보다는 ‘국가(기관)에 의한 범죄’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형사법이 작동되어 법의 침해에 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가장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위법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와 함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한 과정의 위법행위도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 ‘최종행위’가 아니라 … ‘과정의 행위’를 기소하였다. 이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직권남용의 큰 우산 아래서 행하여진 모든 지시 행위는 단계, 정도, 내용 등을 가리지 않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 보는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처벌대상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고, 현실적으로 기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자의적인 선택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문제가 된다. 특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그 상대방에 따라 각각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정의 행위를 한 사람은 최종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될 수 있고 과정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수사기관이 수사 협조 여부에 따라 자의적으로 관여자를 공범 또는 상대방으로 정하여 기소할 수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 최종행위가 기소되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었음에도 과정의 행위만을 기소하여 그 행위가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벌할 수 없게 된 경우,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직권남용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함에 따른

사법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과정의 행위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만 묻는다면 직권남용의 최종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서 미흡하게 되고, 반면에 과정의 행위만으로 최종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묻게 된다면 행위를 초과하는 책임을 묻게 되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최종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기본이어야 하고, 과정의 행위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가별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소추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최종행위를 기소하지 아니한 채 과정의 행위만을 기소하여 직권남용의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지도록 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기무사 사찰과 관련하여 청와대 관계자, 국방부장관 등의 지시로 판단되는 사찰 지시 및 이에 따른 실행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 비밀의 자유,²⁾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진실을 추구할 권리(알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³⁾ 등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받음.

- 권리에 따라 그 행사의 태양은 다양할 수 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실상 항상 행사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야 하며, 국가의 책임이 있는 세월호 참사에서 일반적인 알권리의 특수한 맥락에서의 참사 피해자들의 진실을 추구할 권리는 적어도 이를 추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행사되고 있다고 평가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이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가 없는 한 행사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함.

- 청와대 관련자 및 국방장관, 기무부대원들에게 사찰을 지시한 기무사의 지휘부, 실행총책임자인 부대본부장, 실행자인 본부 및 예하부대원들은 모두 각각의 지휘권한 및

2) “피고인이 도청기를 설치함으로써, 자유롭게 정당활동을 하고 동 회의의 의사를 진행하며, 회의진행을 도청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비추어 회의가 10분 늦어진 사실은 공소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원심이 확정사실과 같이 도청장치를 하였다가 뜯겨서 도청을 못하였다면 회의진행을 도청당하지 아니할 권리(기타 권리)가 침해된 현실적인 사실은 없다.”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현재 2005. 5. 26. 99헌마 513 등)

첩보수집 권한 등을 남용하여 정보 수집 및 보고의 지시와 그 실행을 통하여 민간인이자 국가의 책임과 진상규명을 요구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권리행사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방해하였음. 범죄의 가담 정도와 태양에 따라 양형을 달리할 수 있으나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임.

- 그 동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처벌의 대상이 사찰의 지시자에 한정되어 있고, 사찰의 실행자는 사실상 피해자 지위로 처벌을 피해왔고 이는 사찰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에 정면으로 반함. 또한, 사찰 등에서 최초 지시자 또는 상부 지시자로 제한하여 처벌할 경우, 지시자와 실행자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찰의 대상자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가 면책되는 결과를 낳아 사찰을 하여도 처벌 등을 피할 수 있다는 반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질 위험성이 있음. 사찰 그 자체가 얼마나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개인들의 구체적인 자유와 권리를 현실적으로 방해하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3) 향후 방향

- 피해자의 관점, 피해자의 권리 중심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사찰의 근절이나 그 폐해의 극복은 이루어질 수 없음.

-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거나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사찰 사건들이 피해자들이 수궁할 수 있는 수준을 해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것은 향후 제도 개선의 기초가 될 것임.

- 세월호 특조위 방해, 국정원 및 경찰의 세월호 피해가족 사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찰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진상규명과 해결이 이루어져야 함.

-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권력자와 가해자간의 피해자를 배제한 초법적 태협, ‘북한 보위부 공작원이었지만 수사, 내사의 필요성을 못 느꼈고 참고인조사만 했다’는 과거 국정원의 발언을 연상시키는 ‘감시하는 담당 국정원 직원은 있었지만 사찰은 없었다’는 부실한 조사 결과 발표, ‘실무자들의 협조를 얻어 윗선을 잡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법의 자의적 적용과 사실상의 사면권 행사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없으면 사찰은 극복될 수 없고,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피눈물 흘리며 사지로 내몰리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음.

3. 발제에 대한 질문

(1) 이호영

- 국가기관의 사찰 방지를 위한 ‘권한 축소’ 와 ‘통제 강화’의 기본방향과 세부 내용(예: 정보수집-수사 권한분리, 정보경찰 폐지)에 관한 주요 정당과 정부의 입장을 어떠한지,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의 근거는 무엇이고,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한 어떠한 논의나 시도가 있었는지.

(2) 류하경

- 세월호 피해가족들의 고소고발 내용과 소강원, 김병철에 대한 판결문 모두 사찰과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실제 사찰을 실행한 혹은 중간단계에서 사찰을 지시한 기무사 부대원들은 모두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만 규정되고 있는데 이들도 모두 사찰을 통해 피해가족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자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인 아닌지.

(3) 이정일

- 국가기관의 사찰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토 론 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국정감시네트워크

장유식

1. 민주주의와 사찰금지

○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

- 정보의 또다른 측면은 사찰(查察 -> 伺察)
-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적법절차의 준수와 사후통제에 주력하게 됨(이정일 발제자 동의)
- 정보기관(권력기관)간의 견제·균형의 원리(Check&Balance)가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중요
- 정보기관(권력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궁극의 목표로 해야 함

○ 정보수집은 필연적으로 회색지대가 발생하므로, 가능한 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 국가기관(행정기관)의 활동에는 필수적으로 정보수집이 수반됨
- 국정원은 해외, 북한 관련 정보수집, 경찰은 치안정보, 수사정보, 검찰은 수사정보, 감사원은 직무감찰정보, 기무사는 군사보안 등 정보 수집을 본연의 임무로 함
- 기무사의 경우 군관련 정보에 한해 정보수집권한이 주어질 것이나, 세월호와 같은 민간영역에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불법행위에 이르게 됨
- 각 정보기관(권력기관)의 정보수집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호간의 견제·균형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

2. 발제자 개혁과제에 대한 코멘트

○ 정보와 수사의 분리(분리원칙)

-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함
- 특히 국정원은 비밀정보기관이므로 수사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됨
- 기무사의 수사권을 현병대 또는 경찰로 이관하는 것도 마찬가지 문제의식

○ 정보수집범위 명확화

-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금지 및 관련부서 폐지
- 기무사(안지사)는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근본재편되어야 함(현재 기무사의 직무는 보안업무, 군방첩, 군관련 정보처리, 수사, 지원업무 등 그 권한이 비대함)
- 경찰이 정보경찰(정보과)를 운영하는 것이 합당한지(정보경찰의 폐지 또는 통제인지, 신설이 예고된 국가수사본부와의 관계설정은 어떠한지)

○ 정보기관(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

- 권력이 독점되면 정보수집이 사찰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짐
- 각 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사전·사후적 통제가 필요
-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조정 등도 같은 맥락

정보수사기관의 사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정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오병일

정보수사기관의 민간인 사찰과 감시는 불법적인 권한 남용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합법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그 권한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을 경우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음.

정보수사기관의 사찰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으로서 국가정보원, 기무사,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의 권한 및 기능의 축소, 감독의 강화, 정보와 수사권한의 분리 등 기본적인 방향에 동의하며 아래와 같이 보충 의견을 제시함.

1.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이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포함함. 정보기관, 수사기관은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에서든 불법적인 사찰 과정에서든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게 되므로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처리자임.
-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지나치게 폭넓은 예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임.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1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의 경우 제3장부터 7장까지 포괄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대부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다만, 제58조 4항에서 수집 최소화의 원칙을 적용하고 보안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또한 이러한 예외 조차 정보기관으로서의 적법한 활동을 전제로 하는 바, 만일 정보기관으로서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 사찰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한 경우 제58조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임.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도 일반 개인정보 보호원칙에서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은 행정안전부장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개정됨)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제32조 1항)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파일은 예외임.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법원의 허가 없이도 애초 수집 목적 외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9조2항7호)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민감한 건강정보를 제공받아 왔음. 이에 대한 적절한 감독 메커니즘이 없으며, 정보주체에게 통지되지도 않음.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국가안보, 공공안전, 범죄수사 목적 등 정보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는 있으나 이는 그 목적에 비례해야 하며 이의 제기 절차가 주어져야 하며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감독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2.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 2018년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일련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인터넷 패킷감청(헌법재판소 2018. 8. 30. 2016헌마263), 위치추적 (헌법재판소 2018.6.28. 2012헌마191 · 550, 2014헌마357(병합)), 기지국수사 (헌법재판소 2018.6.28. 2012헌마538)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임.

- 특히 인터넷 패킷감청의 경우 매년 감청의 99%가 국가정보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패킷감청으로 획득한 정보가 실제로 범죄의 증거로 제출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사찰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국가정보원의 감청 설비에 대한 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2008년 이후 2014년까지 새로 인가된 전체 감청 설비 73대 가운데 71대가 인터넷 감청 설비였으며, 이마저도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설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임. . (2014년 유승희 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

-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2015년 11월 5일 한국의 자유권 보호실태를 검토하고 권고문을 발표하였는데, ‘사적 통신에 대한 사찰, 감시, 및 감청’ (Monitoring, surveillance and interception of private communication) 분야에서 “42.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을 이유로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 그리고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감청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밝혔으며, 이어 “43.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감시를 포함해 모든 감시가 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 특히 이용자 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해야 하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를 도입해야 하며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 2005년에 이동형 CAS와 부착식 R2를 번갈아 운용하며 정치인, 언론인, 정부관료,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수천 명의 3G 휴대전화를 도청했던 미림팀과 안기부 X파일의 실체가 폭로된 후 국정원은 불법도청 장비를 자체 폐기했다며, 정보수사기관은 국내에서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는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음. 2019년 12월 18일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비역 중령이 휴대전화 도청 장비를 몰래 제조하여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4년 사이 최소 6개월 동안 28만건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음. 2019년 초에는 기무사 세월호TF가 2014년 국가기관인 전파관리소의 협조를 받아 일반 국민의 통화 내용을 무작위로

도청한 사실이 발각되었음. 이와 같은 불법도감청의 역사를 고려할 때 정보수사기관의 불법 감청을 통제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필요함. 즉,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설비가 투명하게 통제되어야 하며 모든 종류의 감청에 대해 법원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현법불합치 결정으로 2020년 3월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의 인권 침해 조항이 개정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마저 정보수사기관의 입장만을 반영한 미흡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음.

3. 사이버보안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 2015년에 이탈리아 보안업체인 해킹팀이 해킹을 당하면서 국가정보원이 해킹팀의 해킹 프로그램인 RCS를 구매하여 사용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남. 이는 국정원도 인정한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 이전까지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도 국정원이 RCS라는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해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음. RCS는 단지 감청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상자의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국정원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RCS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더욱 고도화된 기술을 자신의 권한을 넘어 시민 감시와 정치 개입을 위해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 지난 2020년 1월 27일, 인터넷 안티바이러스 제작업체인 어베스트(AVAST)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지난 2019년 12월에는 모질라 파이어폭스가 어베스트와 AVG에서 만든 브라우저 플러그인이 사용자를 추적해왔으며 플러그인을 삭제하였음. 이는 인터넷 보안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터넷 보안을 담당하는 업체가 자칫하면 이용자를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국내 공공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고 있으며,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자신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 국가정보원은 공공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고 있으나, 이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국가정보원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포함한 공공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 관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정보기관이 공공분야의 정보통신시설에 대해서 마치 시만텍과 같은 기업이 담당하는 일상적인 보안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정보기관의 은밀한 감시와 정보수집을 억제할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음. 국가정보원은 사이버침해사고 조사 및 위협정보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기에는 영장주의도 적용되지 않음.
- 정보기관이 담당하기에 부적절한 사이버보안 업무를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관하고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국가정보원과 같은 정보기관이 보다 고도화된 기술(예를 들어 얼굴인식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 등)을 민간인 감시를 위해 활용할 우려가 있음.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지 않는 이정일 변호사님의 발제에 이견이 있음. 또한 정보수사기관이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예외 규정을 둘 수 있을지 의문임.

UN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115th session (19 October–6 November 2015).

2019년 12월 27일, 주로 통신사실확인자료 관련 조항을 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이에 대해 인권시민단체들은 반쪽자리 개정이라며 유감을 표시하였음. (<https://act.jinbo.net/wp/42081/>)

K벤치, AVG 어베스트, 무료 백신이란 탈을쓰고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판매. 2020.1.29 보안뉴스. 어베스트와 AVG에서 만든 브라우저 플러그인, 사용자 추적해왔다.

2019.12.5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이 업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산하 ‘공공분야 실무위원회’를 맡고 있고, 공공영역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제5조의2 1항), 보호계획의 수립지침 작성(제6조 4항), 기술적 지원(제7조 1항),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작성(제9조 4항)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사이버안전에 대한 총괄·조정 역할(제5조 1항)을 맡고 있으며, 다른 공공기관의 보안관제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제10조의2 1항)